

[유기농업기사 2차 필답형 준비사항]

Que 1. 유기농업기사 2차 필답형은 관련규정의 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규정문제는 정확하게 정답과 오답이 구별되는 부분이므로 출제자의 부담이 적고 수험장의 이의 신청이 적기 때문에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철저히 암기토록 하십시오.

Que 2. 재배원론, 토양학, 유기농업개론 등의 전반적인 원론 및 범론, 개론분야의 필답문제는 기출문제의 풀이만으로도 충분하며, 명확한 정답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작성하시면 충분히 배점의 일부분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세 가지를 적으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생각나고 자신 있는 답부터 적도록 하십시오.

Que 3. 관련규정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시행규칙, 시행령

- 시행규칙의 별표 1~7, 시행령의 별표 <중요>
-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및 별표1~ 6<중요>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 및 별표 1~ 6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별표 1~ 6
-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둘째 식품산업진흥법 및 시행규칙, 시행령 중 유기가공식품 언급 분야

- 유기가공식품 언급분야 및 별표 4 ~ 6
-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운영지침 및 별표 1~2<중요>

셋째 코덱스가이드라인 및 해외의 유기식품인증규정

- 우리나라 친환경관련 시행규칙의 별표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안내서이므로 광범위한 내용을 그냥 속독하시고 단답형으로 문제로 나올만한 내용들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의 별표와 연관된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시행규칙의 별표만 잘 숙지하셔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외국의 유기식품관련규정(미국, 일본, EU)은 작년 11월에 한국식품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회가 개최내용입니다.(발표자 : 인하대 박민규교수, 단국대 손상목교수, 농업과학원 정만철박사)

※ 기출문제 풀어보신 뒤 규정내용을 훑어보시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형광펜 칠하면서 중요한 부분 꼭 외우세요.

PART 1.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규정

가. 친환경농업육성법

법률 제9623호 일부개정 2009. 04. 01.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4조 (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 (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개정 2009.4.1]

제6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7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8조

삭제 [2009.4.1]

제9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9.4.1]

제10조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9.4.1]

제11조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농업의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 실태
 5.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4.1]

제12조 (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 ②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3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14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5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서로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3장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관리 [개정 2009.4.1]

제16조 (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①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등에 따라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②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6조 (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①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10.1.1]]

제17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7조의2 (인증기관의 지정)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하 "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등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7조의3 (인증의 신청 및 심사)

- 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그 인증신청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인증심사를 한 농림수산식품



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7조의4 (인증의 유효기간)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17조의5 (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친환경농산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4.1]

제17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7조의7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
2.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8조 (표시 변경의 명령 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을 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5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받은 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에 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8조의2 (인증의 취소)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표시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4.1]

제18조의3 (보고 및 점검 등)

-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과 친환경농산물인증 받은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19조의2 (인증품 정보의 표시 권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을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제20조 (우선구매)

-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4장 국제협력 등 [개정 2009.4.1]

제21조 (국제협력)

정부는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공동조사·연구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위해(環境危害) 농업활동 및 자재교역의 억제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2조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정부는 국제여건, 국내자원, 환경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2조의2 (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3.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
4.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물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24조 (청문 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1]

제2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과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1]

제5장 벌칙 [개정 2009.4.1]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5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2. 제17조의5제2호를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의5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17조의5제4호를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임을 알고 그 농산물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17조의5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한 자

[전문개정 2009.4.1]

제25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1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자
3.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4.1]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제2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검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4.1]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수산물식품부령 제102호 일부개정(2009. 12.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8, 2009.12.14]

제2조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1호에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8,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물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9.12.14]

1.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환경 관리방안
3. 병해충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4. 환경친화형 농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폐농자재의 활용방안
5. 농산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방안
9. 그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등 조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2006.4.28 제1525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2007.3.28,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물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2009.12.14]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그밖에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제5조 (시료의 채취 등)

-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한 자는 채취한 시료를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하여야 하며, 그 용기에 채취연월일·채취장소 및 채취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채취량·채취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이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7.3.28]

제7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등)

-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농촌진흥청장은 친환경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제조공정, 원료의 특성·조성비,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제품이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자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품의 명칭과 주성분, 유기농업에의 사용가능성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 ④제2항에 따른 검토를 의뢰한 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공시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검토·공시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3.28]

[본조제목개정 2007.3.28]

제8조 (친환경농산물표시)

-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는 별표 2와 같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 ③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이하 "재포장"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표시와 함께 롯데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 체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제8조 (친환경농산물표시)

-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는 별표 2와 같다.
- ②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2009.12.14]
- ③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이하 "재포장"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표시와 함께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 주소와 롯데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2009.12.14] [[시행일 2010.3.15]]

제9조 (인증기준)

-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2.14]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2.14] [[시행일 2010.1.15]]

제10조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19, 2007.3.28]

1. 삭제 [2003.05.19]
2.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1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①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3.28, 2009.12.14]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2.14] [[시행일 2010.3.15]]

제12조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3.28]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에 한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를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2.14]

제13조의2 (인증기관의 재지정신청 등)

①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지정서

②제1항에 따른 재지정 요건·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8]

제14조 (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1. 별지 제6호서식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수입자·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수입·취급계획서) 1부
2.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수입자·취급자이거나 축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
3. 수입 관련 계약서(수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전문개정 2007.3.28]

제15조 (인증심사의 절차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거나 제1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②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 (재심사 신청 등)

①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를 당해 인증심사를 실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교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각 인증심사,

재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09.12.14]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신청
3. 제1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18조 (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당해 인증서를 발급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0호의2서식의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수입·취급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수입자·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수입·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09.12.14]

②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17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07.3.28]

제20조의2 (승계의 신고)

①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4. 승계 받은 인증기관지정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수입자·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수입·취급계획서) 1부

2. 인증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8]

제20조의3 (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품 출하실적 등 인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 : 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영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재포장 작업 내용이 기록된 문서(취급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3.28]

제21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매의 지원사업

2.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

제22조 (수수료)

①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 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당해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7.3.28,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9.12.14]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단체
2.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생산·유통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제24조

삭제 [2009.12.1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30호 일부개정(2009. 09. 15)

제1조 (목적)

이 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제2조

삭제 [2009.9.15]

제3조

삭제 [2009.9.15]

제4조

삭제 [2009.9.15]

제5조

삭제 [2009.9.15]

제6조

삭제 [2009.9.15]

제7조

삭제 [2009.9.15]

제8조

삭제 [2009.9.15]

제9조

삭제 [2009.9.15]

제9조의2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친환경농자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2인

나. 환경부 공무원 1인

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4인

라. 산림청 공무원 1인

2.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자 중 농촌진흥

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자재 분야의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자재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친환경농자재의 생산자단체·사용자단체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임직원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④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자재의 지정·검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7]

제9조의2

삭제 [2008.10.2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제10조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9.15]

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실적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실적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물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조사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와 지원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5. 삭제[2001.6.22]
6.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12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②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물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조사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와 지원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의 홍보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의 요청
8.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12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③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7.3.27,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물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2.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3.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및 재심사
4. 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5. 법 제17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6. 법 제17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과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8.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9.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점검
10.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수납
1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17조의7제2항, 법 제18조제2항, 법 제18조의3제1항·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 ④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6.22,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물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중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례의 발굴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5]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9.15]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부과기준[제12조관련]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별표1)<개정 2009.12.14>

1. 유기농산물

가. 농림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사용 가능 자재	사용 가능 조건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 오줌 ○ 퇴비화 된 가축 배설물 ○ 대두박, 미강유박, 잠용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 또는 그 원료로 만든 제품 ○ 건조된 농장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퇴구비 ○ 질소질 구아노 ○ 짚(왕겨) 및 산야초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식물잔류물로 만든 퇴비 ○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해조류 및 해조류제품 ○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 나무숯 및 나무재 ○ 천연 인광석 ○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 황산가리 또는 황산가리고토(랑베나이트 포함) ○ 해조류퇴적물, 석회석 등 자연산 탄산칼슘 ○ 마그네슘 암석 ○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적절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냄새 등을 제거한 후 사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지렁이 양식용 자재는 이 목(1) 및 (2)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자재만을 사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폐가구 목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카드뮴이 5산화인산으로 환산해서 1킬로그램 중 90밀리그램 이하일 것 ○ 합성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비료가 첨가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소함량이 60% 미만일 것 ○ 천연암석분말이거나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일 것

○ 스틸리지 및 스틸리지 추출물(암모니아 스틸리지를 제외한다) ○ 염화나트륨 ○ 인산알루미늄칼슘 ○ 붕소 · 철 · 망간 · 구리 · 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 황 ○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 벤토나이트(Bentonite) · 펄라이트(Perlite) 및 제오라이트(Zeolite) · 일라이트(illite) 등 점토광물 ○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 질석 ○ 이탄(泥炭 : Peat) ○ 피트모스(토탄) 및 피트모스추출물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석회소다 염화물 ○ 사람의 배설물 ○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옥침수, 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 포함)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목초액 ○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부산석회, 부산소석회 제외) ○ 미생물제제(미생물추출물 포함) ○ 키토산 ○ 그 밖의 자재	○ 채굴한 염 또는 천연염일 것 ○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카드뮴이 5산화인산으로 환산해서 1킬로그램중 90밀리그램 이하일 것 ○ 화학합성물질로 용해한 것이 아닐 것 ○ 슬러지류를 먹이로 하는 것이 아닐 것 ○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 고온발효 : 50°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 저온발효 : 6개월 이상 발효된 것 - 직접 먹는 농산물에 사용금지 ○ 유해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아니할 것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규격 및 품질등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토양의 성질에 변화를 주기 위해 공급하는 물질에 한하며, 천연물질 또는 천연물질에서 유래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할 것
---	--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사용 가능 자재	사용 가능 조건
(가) 식물과 동물 ○ 제충국 제제 ○ 데리스 제제 ○ 쿠아시아 제제 ○ 라이아니아 제제 ○ 님(Neem)제제 ○ 밀납(프로폴리스) ○ 동식물 유지 ○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소금 및 소금물 ○ 젤라틴 ○ 레시틴(인지질) ○ 카제인 ○ 식초 등 천연산 ○ 누룩곰팡이(Aspergillus)의 발효생산물 ○ 버섯 추출액 ○ 크로렐라의 추출액 ○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제·천연약초, 한약제 및 목초액 ○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나) 미네랄 ○ 보르도액·수산화동 및 산염화동 ○ 부르고뉴액 ○ 구리염 ○ 유황 ○ 맥반석 등 광물질 분말 ○ 규조토 ○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 규산나트륨 ○ 중탄산나트륨 및 생석회 ○ 과망간산 칼륨 ○ 탄산칼슘 ○ 파라핀유 ○ 키토산	○ 제충국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데리스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쿠아시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라이아니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님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일 것 ○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일 것 ○ 목초액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다) 생물학적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 ○ 미생물 제제(생물농약) ○ 천적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생물농약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라) 덧 ○ 성유인물질(페로몬) ○ 메타알데하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제	○ 작물에 직접 살포하지 아니할 것
(마) 기 타 ○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 비눗물	○ 화학합성비누 및 합성세제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에틸알콜	○ 발효생산된 에틸알콜이어야 하며, 메틸알콜은 정제과정상 부득이한 경우 추출용매로만 사용 가능
○ 동종요법 및 아유베딕(Ayurvedic)제제 ○ 향신료·바이오다이나믹제제 및 기피식물 ○ 웅성불임곤충 ○ 기계유제 ○ 그 밖의 자재	○ 식물의 병해충 등 관리를 위해 공급하는 물질에 한하며, 천연물질 또는 천연물질에서 유래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할 것

나 . 축산물

(1)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자재중 단미사료

구분	세 분	사용 가능 자재	사용 가능 조건
식물성	곡 물 류	(가) 옥수수·보리·밀·수수·호밀·귀리·조·피·트리트 케일·메밀·루핀종실 및 두류 (나) (가)항 곡물의 1차 가공품 및 전분(알파파 전분을 포함한다)	○ 유기농산물 인 증기준에 맞게 생산 된 것
	곡물부산물 (강 피 류)	곡채류·밀기울·말분·보리겨·쌀겨·쌀겨탈지·옥수수 피·수수겨·조겨·두류피·낙화생피·면실피·귀리겨·아 몬드피 및 해바라기피	○ 유기농산물 인 증기준에 맞게 생산 된 것에서 유래된 것(다른 제품의 혼 입이 없을 것)
	박 류 (단백질류)	대두박(전지대두를 포함)·들깨묵·참깨묵·채종박·면 실피·낙화생박·고추씨박·아마박·야자박·해바라기 씨박·피마자박·옥수수배아박·소맥배아박·두부박· 케이폭박, 팜유박, 글루텐 및 주정박	
	근 괴 류	고구마·감자·돼지감자·타피오카·무 및 당근	○ 곡물류와 같음
	식품가공부산물	두류가공부산물·당밀 및 과실류가공부산물	○ 곡물부산물류와 같음
	해 조 류	해조분	○ 천연에서 유래된 것
	섬유질류	목초·산야초·나뭇잎·곡류정선부산물·임산가공부산 물·볏짚·보리짚·그 밖의 농산물고간류·풋베기사료 작물·옥수수속대·사탕수수박·사탕무우박·감귤박 및 발효사료	○ 유기농산물 인 증기준에 맞게 생산 된 것. 다만, 야생의 것은 잔류농약이 검 출되지 아니할 것
	제약부산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약부산물	○ 곡물부산물류와 같음
	유 지 류	옥수수유·대두유·면신피·채종유·야자유·해바라기 유·팜유 및 미강유	○ 곡물부산물류와 같음
동물성	단백질류	어분·어즙흡착사료, 유·유제품 및 육분·육골분(반 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양식하지 아니 한 것(어분·어즙 흡 착사료에 한함)
	무기물류	골분·어골회 및 패분	○ 순도 99%이상인 것
	유 지 류	우지 및 돈지(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순도 99.9%이상인 것
광물성	식 염 류	암염 및 천일염	○ 천연의 것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인산1칼슘·인산2칼슘·인산3칼슘 및 석회석분말	
	광 물 질 첨 가 물	나트륨·염소·마그네슘·유황·가리·망간·철·구리·요 오드·아연·코발트·붕소·셀레늄·몰리브덴 및 크롬 의 화합염류(유기태화한 것을 포함한다)	
	혼합광물질	2종 이상의 광물질을 혼합 또는 화합한 것으로서 사료에 첨가하는 형태로 제조한 것에 한함	
기 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유기축산물 생산용 사 료로 사용이 허용된 물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 정하는 물질	

(2)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자재중 보조사료

구 분	사용 가능 자재	사용 가능 조건
산 미 제	젓산, 개미산 등 천연산미제	○ 천연의 것 및 천연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다른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것. 다만, 배합사료에 1%미만 사용되고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보조사료내 10%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가능
항응고제	활성탄	
결 착 제	천연결착제	
유 화 제	천연유화제	
항산화제	천연항산화제	
항곰팡이제	천연항곰팡이제	
향 미 제	천연향미제	
규산염제	조라이트·벤토나이트·카오린 및 일라이트와 그 혼합물	
착 색 제	천연착색제	
추 출 제	유카추출물·타우마린·목초추출물·해초추출물 및 과실추출물	
완 충 제	중조·산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혼합물	
올리고당류	갈락토올리고당·플락토올리고당·이소말토올리고당·대두올리고당·만노스올리고당 및 그 밖의 올리고당	
효 소 제	아밀라제·알카리성프로테아제·키시라나아제·피타아제·산성프로테아제·리파아제·셀룰라아제·중성프로테아제·프로테아제·락타아제 및 그밖의 효소제와 그 복합체	
생 균 제	엔테로кок카스페시엄·바실러스코아글란스·바실러스서브틸리스·비피도박테리움슈도롱검·락토바실러스아시도필루스·효모제 및 그밖의 생균제	
아미노산제	아민초산·DL-알라닌·염산L-라이신·황산L-라이신·L-글루타민산나트륨·2-디아미노-2-하이드록시메치오닌·DL-트립토판·L-트립토판·DL메치오닌 및 L-트레오닌과 그 혼합물	
비타민제 (프로비타민제 포함)	비타민A·프로비타민A·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B6·비타민B12·비타민C·비타민D·비타민D2·비타민D3·비타민E·비타민K·판토텐산·이노시톨·콜린·나이아신·바이오틴·엽산과 그 유사체 및 혼합물	
기 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유기축산물 생산용 사료로 사용이 허용된 물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물질	

2.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가. 무농약농산물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는 제1호가목(2)에 따른 자재로 한다.

나. 무항생제축산물에 일반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항생제 및 별표 3 제5호마목 (3)의 물질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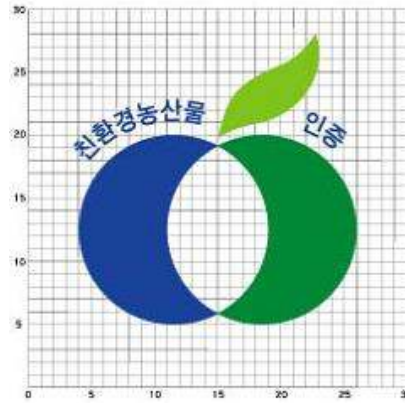
3. 저농약농산물

농약(유기합성제초제를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친환경농산물 표시([별표 2] <개정 2007.3.28>)

1. 표시도형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1) 도형의 가로 길이(정원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중첩된 부분은 $50/100 \times W$ 로 한다.

(2) 상단 도형은 2개의 겹쳐진 정원 상단 꼭지점을 기준으로 우측원의 가로 및 세로 모두 $50/100 \times W$ 로 표시도형 우측의 작도법에 준하여 곡선으로 표시한다.

나. 표시도형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종류명칭(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을 표기한다. 다만, 유기로 전환중인 경우에는 유기농산물 종류명칭 뒤에 "(전환기)"를 병기하여야 한다.

다.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라. 표시도형의 글자 색상은 군청색이고, 바탕색은 백색이며, 좌측 원의 색상은 군청색, 우측 원의 색상은 녹색, 가운데 중첩된 원의 색상은 백색이고, 상단 잎사귀 모양의 색상은 연두색이다.

마. 친환경농산물 종류명칭을 쓰는 곳에는 친환경농산물 종류에 따라 유기농산물은 녹색,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은 하늘색, 저농약농산물은 주황색을 사용한다.

바. 배색 비율은 군청색 C100+M60, 녹색 C100+Y100, 하늘색 C90+Y20, 주황색 M40+Y100으로 한다.

사.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아.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문자

구 분	표 시 문 자
가 .유기농산물	○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또는 유기○○(○○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유기재배농산물·유기재배○○ 또는 유기축산○○
나 .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 무농약재배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 또는 무항생제사육○○
라 .저농약농산물	○ 저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 ○ 저농약재배농산물 또는 저농약재배○○

비고

1. 천연·자연·무공해·저공해 및 내추럴(natural)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2.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로 표시할 것
3. 유기로 전환중인 경우에는 표시문자의 뒤에"(전환기)"를 표시할 것
 - 예시 : 유기농산물(전환기), 유기○○(전환기)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인증기준(별표3)[시행일 2010.1.15]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재배포장"이라 함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 나. "화학비료"라 함은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다. "유기합성농약"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기화합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라. "윤작"이라 함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를 말한다.
- 마. "관행농업"이라 함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형태를 말한다.
- 바.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 사. "유기사료"라 함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사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아. "유해잔류물질"이라 함은 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의약품의 인위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동물에 잔류되거나 또는 농약·유해중금속 등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자연적인 오염으로 인하여 축산물 내에 잔류되는 화학물질과 그 대사산물을 말한다.
- 자.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차. "사육장"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나 방목·운동장을 말한다.
- 카. "휴약기간"이라 함은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 타.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 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 파. "무항생제사료"라 함은 사료 안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하게 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 하. "시유"라 함은 원유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단순살균처리 한 것을 말한다.

2. 유기농림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2년 이상 기록한 다음의 영농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재배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 (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에 관한 자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배포장은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이전의 농장사용 경력을 감안하여 전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전환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다년생 작물 (목초를 제외한다) : 최초 수확 전 3년의 기간 (나) (가) 외의 작물 :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의 기간 (4)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장은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자재 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지역이어야 한다. (5)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인 및 총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하며,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종자(이하 "유기종자"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재배방법	(1)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3)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4) (2) 및 (3)에 따른 방법으로 작물의 적절한 영양공급 또는 토양의 영양상태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분뇨퇴·액비"라 한다)는 유기·무항생제축산물 기준에 맞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무항생제사료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더미가 55~75℃를 유지하는 기간이 15일 이상 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함 (나)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성분 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규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6)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윤작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 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차) 병해충 등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
----------------	---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유기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덩(페로몬 및 전기유혹 덩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유기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유기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유기농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양이 동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의 10분의 1 이하하여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마. 기 타	(1)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2)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유기축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일반원칙	(1)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의 가축은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농가에서의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전통적인 사양체계의 농장구조가 초지에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기사료 제공으로 가축을 생산할 수 있다. (4) 가축의 생리적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체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축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가축 질병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의 건강과 복지유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 사용할 수 있다. (6) 1년 이상 기록한 다음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내용 (나) 질병발생 및 예방관리계획 (다) 퇴비·액비의 살포량 및 사용일자 등 토양 관리상황 (라)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내용 (마) 격리기간을 포함한 특정목적에 위하여 투여되는 처치·동물약품·첨가제·예방접종 등 약품사용 및 질병관리의 내용 (바)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내역 및 도축·가공업체 내용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사육장
 및사육조건

- (1) 사육장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축사조건
 - 1)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가)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 나) 공기순환, 온·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추는 것
 - 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
 - 2) 축사의 밀도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사육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 가축의 품종·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나)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적 욕구를 고려할 것
 - 다)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앉고 돌을 수 있으며, 활개를 칠 수 있는 등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될 것
 - 3)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교차감염과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 4) 축사의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아니하고,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휴식공간에서는 건조깔짚을 깔아 줄 것
 - 5) 번식돈은 임신말기 또는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사를 하여야 하고, 자돈 및 육성돈은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돈 압사 방지를 위한 포유기간의 모돈과 조기이유한 자돈의 생체중이 25킬로그램까지는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있다.
 - 6) 가금류의 축사는 짚·톱밥·모래 또는 아초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이 제공되어야 하고,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한 화의 크기 및 높은 수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산란계는 산란상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산란계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부여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자연일조시간을 인공광으로 연장할 수 있다.
 - (나) 방목조건
 - 1) 방목지 또는 운동장이 있는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는 부분적으로 지붕을 설치하고 가능한 가축의 생리적조건·기후조건 및 지면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수소의 방목지 접근, 암소의 겨울철 운동장 접근 및 비육말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2) 가금류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노천구역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 나)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시냇물·연못 또는 호수에 접근이 가능할 것
- (3)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병행사육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 (가)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을 농장의 가축은 일반가축(무항생제 사육 가축 포함)과 동일 축사 내에서 사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유기가축, 사료취급,약품투여 등은 비유기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인증가축은 비유기 가축사료, 금지물질저장, 사료공급·혼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다. 자급사료 기 반	(1)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목장 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재배·생산된 조사료를 구입하여 급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3)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는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기준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멸강충 등 긴급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사료작물은 유기농산물 허용자재 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유기사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기사료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가축의 선택 번 식 방 법 및 입식	(1) 가축은 유기축산 농가의 여건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골라야 한다. (가) 산간지역·평야지역 및 해안지역 등 지역적인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축종별로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 품종 및 계통에서 발견되는 스트레스증후군 및 습관성유산 등의 건강상 문제점이 없을 것 (다) 품종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병성이 있을 것 (2)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인공수정을 허용할 수 있다. (3) 수정란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생산용·알생산용 및 녹용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가축의 품종 및 번식방법이 (1) 내지 (3)에 적합한 경우

마. 전환기간

(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축 종	생산물	최 소 사 육 기 간
한·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12개월 이상)
	송아지식육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입식 후 6개월
젖 소	시유	착육우는 90일 미경산우는 6개월
산 양	식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미경산양은 6개월
돼 지	식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5개월 이상)
육 계	식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3주 이상)
산란계	알	입식 후 3 개월
오 리	식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6주 이상)
	알	입식 후 3 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시까지(최소 12개월)
	녹용	녹용성장기간 4개월

(2) 방목지·노천구역 및 운동장 등의 사육여건이 잘 갖추어지고 유기사료의 급여가 100퍼센트 가능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위 전환기간 10퍼센트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제1호에 전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축종은 해당 축종과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의 전환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 전환기간을 설정한다.

(4) 동일 농장에서 가축·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동시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 자체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 하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의 전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동 기간 동안의 유기사료 급여는 (1)호의 전환기간 동안 급여하고, 나머지 기간은 일반사료를 급여할 수 있다.

바. 사료 및 영양관리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기사료를 급여할 수 있다. (가) 건물(乾物 : dry matter)을 기준으로 유기사료를 반추가축의 경우에는 85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상 급여 (나) "유기축산물(전환기)"로 표시하려는 축산물의 경우 건물을 기준으로 유기사료를 반추가축은 45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은 40퍼센트 이상 급여(무농약농산물 또는 그 부산물로 유래된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기준으로 반추가축은 60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은 55퍼센트 이상 급여) (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 되고,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 급여를 권장한다. (4) 유기사료 및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 급여할 경우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범위 안에서 비의도적인 혼입은 인정될 수 있다.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 및 보조사료는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재기준과 같다. (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됨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	--

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라)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종/품종의 선택 (2) 가축의 기생충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1) 내지 (3)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6)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호르몬 사용은 치료목적으로만 수의사의 관리 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 (7) 가축에 있어 꼬리부분에 점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 또는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8)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다.
---------------------------	---

아. 운송·도 축·가공과정 의 품 질 관 리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기자극이나 대증요법의 안정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축의 도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도체 및 원유 등 당해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는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생축의 저장 및 수송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6) 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처리나 천연제제는 유기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7) 유기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가축분뇨 의 처리	(1) 가축사육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시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무농약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1년 이상 기록한 다음의 영농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재배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 (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에 관한 자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인 및 총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하며,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재배방법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4) 가축분뇨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윤작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포장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 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차) 병해충 등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
---------	---

라. 생산물의품질 관리등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및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 등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에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덩(페로몬 및 전기유혹 덩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모토를 이용할 수 있다.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전적으로 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양이 동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의 10분의 1 이하하여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마. 기 타	(1) 수경재배농산물 및 양액재배농산물은 나목(1)·(2)와 다목(1)·(3)·(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수경재배농산물 및 양액재배농산물 중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무농약농산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무농약농산물 이상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무항생제축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1년 이상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내용 (나)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내용 (다) 질병발생 및 예방관리계획 (라) 격리기간을 포함한 특정목적에 위하여 투여되는 처치·동물약품·첨가제·예방접종 등 약품사용 및 질병관리의 내용 (마)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내역 및 도축·가공업체 내용 (바) 퇴비·액비의 살포량 및 시용일자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이용에 대한 내용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위탁사육의 경우 자축공급 농가기록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축사 및 사육조건	(1) 축사조건 (가)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2) 공기순환, 온·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나) 축사의 밀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라) 축사의 바닥은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무항생제사육 가축과 일반가축의 병행생산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가) 무항생제사육 농장의 가축은 일반가축과 동일 축사 내에서 사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무항생제사육 가축, 사료취급, 약품투여 등은 일반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관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 무항생제사육 가축은 일반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공급·혼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다. 가축의 입식및번식 방법	(1)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기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생산용, 알생산용과 녹용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가축의 번식방법이 (1)에 적합한 경우
라. 전환기간	(1)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자는 생후부터 출하시까지 전 기간 동안 이 호의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육한 가축을 무항생제축산물로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입식할 경우 제3호 마목(1) 본문의 전환기간 이상을 이 호의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마. 사료및 영양관리	(1)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은 항생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2) 무항생제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기간동안 일반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됨 (4)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동물복 지및질병관 리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비타민 및 무기물 등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2) 가축의 기생충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1) 내지 (3)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6)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운송·도 축·가공과 정의 품질 관리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축의 도축은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도체 및 원유 등 당해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생산된 원유와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생축의 저장 및 수송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이 경우 <u>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u>여야 한다. (6) 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처리나 천연제제는 무항생제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7) 무항생제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가축분뇨 의 처리	(1) 가축분뇨의 처리는 제3호자목(1) 내지 (4)를 준용한다.

6. 저농약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1년 이상 기록한 다음의 영농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재배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 (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에 관한 자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인 및 총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하며,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재배방법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u>2분의 1 이하</u> 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u>2분의 1 이하</u> 여야 하며,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u>2배수</u> 를 적용한다(적용예시 : 수확 3일 전까지 사용 → 수확 6일 전까지 사용). 다만, 안전사용기준상 살포횟수가 1회로 되어 있는 약제는 살포횟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유기합성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5) 가축분뇨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의 품 질 관 리 등	(1)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 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잔류농약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u>2분의 1 이하</u> 여야 한다.
마. 기 타	(1) 수경재배농산물 및 양액재배농산물은 나목(1)·(2)와 다목(3)·(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경재배농산물 및 양액재배농산물중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저농약농산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저농약농산물 이상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서 잔류농약은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u>2분의 1 이하</u> 여야 한다.

7. 재포장 과정(취급자)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다음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구입한 원료 농산물의 재포장 과정에 대한 자료 (나) 원료 농산물 구입량과 재포장 농산물의 판매량에 관한 자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나. 작업기 록 및 이력 관리	(1) 작업장에 농산물 입고 및 출하에 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한다. (2) 기록장에는 다음의 필수기록 사항과 이력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입고이력 : 입고일자, 물량, 품목,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명·주소, (가능하면 롯데번호) (나) 출하이력 : 출하한 판매처명, 판매처 주소, 날짜, 품목, 물량, (가능하면 롯데번호 또는 리콜할 수 있는 번호체계)

다. 생산물의 품 질 관 리 등	(1) 원료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재포장하는 과정에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및 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1 제1호가목(1)의 자재 이외의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품목에 인증종류가 다른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를 혼합하는 경우 낮은 단계의 인증 종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에 준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작업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에 준하여야 한다. (5) 농산물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재포장 작업구역, 생산물의 저장 및 수송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7)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친환경농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8)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덩(페로몬 및 전기유혹 덩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구조도를 이용할 수 있다. (9)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생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2)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생산물에 저농약농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잔류농약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양이 동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14)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기준은 별표 3 제3호아목(5) 및 제 5호사목(5)를 적용한다.
----------------------------------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인증기관의 지정기준(별표 4)<개정 2009.12.14> [시행일 : 2010.3.15]

1. 조직및인력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인증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1)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을 갖추는 것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일 것

(가) 농학계열(수의학 관련 계열을 포함한다)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는 그 기간 동안 농산물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 외국 인증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제도에 따라 (가) 내지 (다)의 기준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2. 시설

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지정기준에 따른 검정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나. 외부에 위탁하여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검정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인증업무 실시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다. 인증수수료

라.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바.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인증업무의 범위(별표 5)<개정 2007.3.28>

구분	인증업무의 범위
유기농산물	○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 저농약농림산물
재포장 과정	○ 재포장 과정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별표 6] <개정 2009.12.14>)

1. 농림산물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운영에 관한 기록과 농장의 여건 및 생산물이 별표 3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1) 다음의 경우에 조사·분석함

(가) 재배포장의 토양은 폐광산 지역, 폐기물 매립지 등 주변환경 및 사용자재 등으로부터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재배용수의 수질은 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灌漑)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로서 그 용수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생산물은 재배방법 또는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라) 퇴비는 유기·무항생제 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에서 유래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

(2)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퇴비 및 생산물에 대한 심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및 출장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퇴비원료분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사료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 그 밖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성적으로 함

(3)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및 생산물의 시료채취 방법

(가) 재배포장의 토양

1) 인증신청 필지별로 조사함. 다만, 필지가 지형적인 입지조건, 격리거리 및 관개수원 등이 유사하여 토양중금속 및 유기물 함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한 필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필지로 간주할 수 있다.

2) 시료채취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으로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

3) 시료채취는 채취지점의 지표에서 발토양은 10센티미터, 논토양은 15센티미터 깊이까지의 흙을 각 100그램씩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2등분한 후 1점은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결과 통보시까지 보관함

4) 시료량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약 500그램 ~ 600그램)으로 함

(나) 용수

1) 재배용수의 수원별로 조사함. 다만, 용수원의 격리거리 및 지형적인 입지조건 등이 유사하여 수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수원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용수원으로 간주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시료량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약 2리터 ~ 4리터)으로 함

(다) 생산물

생산물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 및 분석 등에 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요령에 따라 시행

(라) 퇴 비

항생물질은 「사료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사료 중 항생물질 분석방법에 따르며, 유해성분은 「비료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에 따름

(마) 시료의 채취 및 송부방법

1) 토양과 수질조사에 필요한 분석용 시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직접 채취

2) 채취한 시료는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시험연구기관으로 송부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무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나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당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인증심사원은 나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사.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축산물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운영에 관한 기록과 농장의 여건 및 생산물이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가축축사토양·사료확보·사양관리·가축분뇨처리 및 대장 기록 등을 검사 또는 검토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검정 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토양·용수 및 사료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양·용수검사 : 시료채취 등의 방법은 제1호가목(3)의(가)·(나)를 적용하며, 용수는 가축에게 직접 급여하는 음용수를 채취한다. 다만, 무항생제축산물은 토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사료검사 : 인증심사원은 농장을 방문하여 가축의 먹이로 공급되는 사료에 대해 유기사료 또는 무항생제사료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에 필요한 적당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분석기관에 의뢰

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인증을 받은 자가 최초로 출하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며, 유해잔류물질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다만, 인증심사시 축산물 검사가 가능할 경우 인증심사원은 해당 축산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물을 최초로 출하하려는 때에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신청

(2) 유해잔류물질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신청농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의뢰

(3) 삭제 <2009.12.14>

(4)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다음과 같이 함

◦ 식육 : 축종별로 500그램(다만, 지방 채취의 경우: 10g, 신장·간 채취의 경우: 50g)

◦ 우유(산양유 포함) : 500밀리리터(집유조에서 채취)

◦란 : 5개 이상

(5) 시료채취에 있어서 인증심사원은 적절한 시료채취기구 및 용기를 사용하여 시료가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채취

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라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바.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당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인증심사원은 라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자.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차.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재포장 과정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재포장 작업장을 방문하여 작업환경 및 생산물이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1) 용수 및 생산물에 대한 심사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함

(2) 용수 및 생산물의 시료채취 방법과 시료송부 방법은 1호가목 (3)에 따름

(3) 작업장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에 적합하거나 준하는지를 심사함

(4)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 서류의 작성·비치 상태를 심사함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재포장 과정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나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때에는 인증심사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당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인증심사원은 나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사.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인증기관의 행정처분기준(별표) <개정 2009.12.14>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의6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 하여 인증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의6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다.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의6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법 제17조의6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마.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법 제17조의6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행정처분기준(별표7의2)

<신설 2007.3.28>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횟수 적용에 있어서는 각 위반행위별로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동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유통·판매업자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법 제18조 제1항	인증표시 변경		
나.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유통·판매업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법 제18조 제1항	인증품 판매금지 7일	인증품 판매금지 15일	인증품 판매금지 1개월
다.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을 받은 자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1)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의 비산 2) 관개 또는 이웃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3) 과실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재배작물이나 토양에 투입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	법 제18조 제1항	표시 사용정지 1개월	표시 사용정지 3개월	표시 사용정지 6개월
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을 받은 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1) 오염이 의도적이지는 아니지만 종자·친환경자재나 장비 등에 의해 전이되었을 때 2) 저농약농산물 인증기준이 되는 재배방법을 따랐으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종류별 인증기준을 의도적이지는 아니지만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	표시 사용정지 3개월	표시 사용정지 6개월	표시 사용정지 9개월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수수료([별표 8] <개정 2009.12.14>)

1. 인증신청

가. 신청비 : 1건당 5만원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 인증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의하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다. 인증기관의 운영실비

(1) 인증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실비를 인증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1)의 운영실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상한액을 정하여 고시한다.

라.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 지정 및 재지정 신청

가. 신청비 : 1건당 10만원

나.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인증기관지정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심사에 소요되는 2일(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한다.

(3) 외국인증기관 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의하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3. 유효기간 연장신청

가. 신청비는 5만원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은 제1호가목에 따른 신청비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는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장비를 준용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개정 2009.9.15>)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2배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7조 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나. 법 제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 제1항제2호	경고	10만원	20만원
다. 법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검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7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법 제27조 제1항제4호	경고	10만원	20만원
마.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장비 등의 점검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7조 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 제1항제5호	경고	10만원	20만원

4.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4호(2010년 2월 8일)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단체신청”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증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을 말한다.
5. “인증받은 자”라 함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 수입자, 취급자를 말하고, 생산자 중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이라 한다.
6.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조사와 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4 제3호의 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생산과정조사를 말한다.
7.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과 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4 제3호의 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8. “지원장”은 「농림수산물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9. “출장소장”은 「농림수산물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8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10. “전문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요령의 적용범위)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4조(인증신청 안내) ①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수수료,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한다.

②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신청품목의 재배·유통관리 특성, 생산자 단체의 결성 여부 및 자체품질관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생산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체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③출장소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게 전문인증기관 지정내역을 안내하고 전문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출장소장은 담당인력과 인증 농가수를 고려하여 인증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5조(인증의 신청) ①인증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내로 수출하거나 국내 수출을 목적으로 한 유기가공식품의 원료를 생산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을 수입하여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

3.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려는 자

②인증신청 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종이거나 생육중인 농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이 경우 생육기간은 파종일부터 수확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과실류 등 매년 수확하는 다년생 작물의 경우 휴면이 종료된 시기부터 수확완료일까지로 한다.)

2. 수입자·취급자 : 인증기준에 따라 수입·취급하려는 농산물

③신청인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수입·취급계획서, 영농관련자료 또는 경영관련자료(이하 “인증신청 서류”라 한다.)를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중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은 전문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생산자는 규칙 별표 3의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별(유기농림산물·유기축산물·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신청하고, 수입자와 취급자는 신청 업체별로 신청한다.

⑤단체신청의 경우, 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작성하고, 인증품생산계획서 및 영농관련 자료 또는 경영관련자료는 단체에 소속된 생산자별로 작성한다.

제6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접수한다. 이때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증을 받은 농장(포장)에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다만, 유효기간연장 신청은 제외한다.)
- 제7조(인증심사) ①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④규칙 제15조제2항 별표 6에 따른 인증심사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①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에 적합으로 판정한 신청인에게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에 부적합으로 판정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고지)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표시 등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에게 연1회 이상 인증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영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의 비치·보존, 인증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의 비치·보존, 재포장 작업내용이 기록된 문서(취급자)의 비치·보존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 제10조(생산계획 변경 등) ①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계획(이하 “수입·취급계획”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농장(포장)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영농규모를 줄이거나 늘리려고 하는 경우
 4. 단체인증의 경우 구성원의 일부를 변경(추가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
 5. 기타 인증서에 기재된 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 ②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제19조에 따라 해당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취급하기 위해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2. 유효기간 이내에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생산된 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 이내에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된 인증품에 한함)

②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품의 출하가능기간까지로 하고 인증서에 인증품 출하가능량을 기재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친환경농산물 표시

제12조(친환경농산물 표시) ①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품을 출하하려는 때에는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규칙 제8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여야 하며, 별표 4의 예시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②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받은 농장·작업장 소재지에 인증 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 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17조의4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인증품 표시의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 4 장 사후관리

제13조(생산·수입·판매 실적 제출) 인증을 받은 자는 매년 생산·수입·판매가 종료된 이후 또는 매년 다음 해 1월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인증 받은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품 생산·수입·판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품의 사후관리 조사) ①인증품의 사후관리 조사는 생산과정조사와 유통과정조사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유통되는지에 관한 사항
2.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친환경농산물 표시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3. 인증품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GMO 검사를 포함한다.)
4.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지에 관한 사항

②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③출장소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추

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출장소장에게 관련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조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⑤조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출장소장은 조사결과 관할지역이외에서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을 유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사실과 관련 자료를 해당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칙 제8조의 친환경농산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 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7조의5(부정행위의 금지)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4. 법 제18조의2(인증의 취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5. 법 제25조의2조,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

⑦전문인증기관이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생산과정 조사 등 사후관리는 재배지 관할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이 실시한다.

제15조(조사결과 조치) ①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결과 제14조제6항의 각 호와 같은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이를 통보받은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의뢰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표시변경의 명령 등은 규칙 제20조제2항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출장소장이 실시한다.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증의 취소는 해당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3. 법 제25 및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출장소장이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한다.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17조의7제2항, 법 제18조제2항, 법 제18조의3제1항·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함)의 부과는 영 제12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지원장이 실시한다.
5. 기타 행정지도 사항은 해당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법 제18조에 따른 표시변경의 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재배지 관할 출장소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처분의 적용 기준) 법 제18조의2제2호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제 5 장 기타 행정사항

제17조(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운영) ①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의 효율적 관리와 인증품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신청서 접수, 인증심사, 인증서교부, 사후관리, 행정처분, 출하량 관리 등의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분기 마다 전문인증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인증 및 사후관리 실적은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18조(인증심사원 교육)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매년 인증심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심사원의 자세 및 준수사항
2.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3. 서류심사·현장심사·보고서작성 요령
4. 기타 인증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인증기준의 세부사항(별표 1) <매우 중요한 부분>

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이하 “인증부가기준”이라 한다.)은 규칙 제9조 관련 별표3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일반농산물”이라 함은 관행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 나. “병행생산”이라 함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의 일반농산물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라 함은 종자를 소독하기 위해 유기합성농약으로 분의(紛依), 도포(塗布), 침지(浸漬) 등의 처리를 한 종자를 말한다.
- 라. “배지(培地)”라 함은 버섯류, 양액재배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토양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 마.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이라 함은 종실(種實)의 싹을 틔워 일정기간 재배하여 종실, 어린싹, 어린줄기, 어린뿌리를 먹는 농산물을 말한다. (예 : 발아농산물, 콩나물, 숙주나물, 새싹채소 등)
- 바.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 사. “계획(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당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이행계획서를 세우고 이행계획에 따라 실천함을 의미한다.
- 아. “완충지대”이라 함은 인접지역에서 사용한 금지물질이 인증을 받은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인증을 받은 지역을 두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 자. “친환경농산물표시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표시의 기준을 말한다.
- 차. “인증을 받으려는 ~”으로 규정된 요건은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인증 받은 ~”을 의미한다.

2. 유기농림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영농관련 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경운(耕耘), 파종(播種), 재식(栽植), 시비(施肥), 잡초관리, 병해충 관리 등 주요 농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 (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재배포장에 투입된 모든 영농자재의 사용량과 사용목적 및 영농자재 구입처 (다)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 (라) 최근 1년간의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량과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 (2)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1) 버섯류 등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에 사용된 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또는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해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토양검정결과 토양비옥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集積)된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재배포장의 토양에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재배포장의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되며, 전환기간의 일부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단축사유 : 재배포장에 최근 2년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토양검정결과와 염류가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전환기간을 단축하여도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연장사유 : 재배포장에 과거에 사용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최근 1년 동안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6) 일반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로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및 육묘과정이 유기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8) 재배포장 주변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완충지대를 설정한 경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재배방법	(1) 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재배포장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장기간의 윤작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장 또는 배지에 재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최소 3년 주기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일정기간 이상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還元) 한다. (나) 최소 2년 주기로 식물분류학상 “과(科)”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되 재배작물에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포함한다. (다) 최소 2년 주기로 담수재배작물과 원예작물을 조합하여 답전윤환재배(畚田輪換栽培)한다. (라) 다년생작물의 경우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을 이용하여 초생재배(草生栽培)한다. (2)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1),(2)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유기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일반농산물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유기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나목 세척 및 소독 기준에 따른다. (3)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로 규칙 별표 3 제2호라목(8) 단서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농산물의 친환경농산물 표시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4) 인증품 출하시 친환경농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5)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별표 3 제7호의 기준을 준수하는 취급자에게 위탁·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인증품을 직접 포장하지 않고 위탁하여 포장하는 경우 (나) 벼, 보리 등 도정이 필요한 경우 (다) 세척, 절단 등 단순처리가 필요한 경우 (6)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채취지역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도록 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또는 위성항법장치에 채취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나) 채취예정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채취예정수량 조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채취과정에서 해당지역 내 자생환경의 안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종의 유지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채취한다. (마) 인증을 받으려는 채취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같은 품목을 채취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병행생산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비치하여야 하는 문서는 1년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3. 유기축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최근 1년간의 동물용의약품의 구매량,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을 기록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량과 해당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축사 및 사육조건	(1) 유기가축 1두당(수당)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요면적 (단위:㎡)은 다음과 같다.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의 산정방식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용한다.) (가) 한·육우																																		
<table><tr><td>시 설 형 태</td><td>번 식 우</td><td>비 육 우</td><td>송 아 지</td></tr><tr><td>방 사 식</td><td>10</td><td>7.1</td><td>2.5</td></tr></table>						시 설 형 태	번 식 우	비 육 우	송 아 지	방 사 식	10	7.1	2.5																						
시 설 형 태	번 식 우	비 육 우	송 아 지																																
방 사 식	10	7.1	2.5																																
①성우1두=육성우 2두 ②성우(14개월령 이상), 육성우(6개월~14개월 미만), 송아지(6개월령 미만) ③포유중인 송아지는 두수에서 제외 (나) 젖소																																			
<table><tr><td rowspan="2">시설형태</td><td colspan="2">경 산 우</td><td rowspan="2">초 임 우 (13~24월령)</td><td rowspan="2">육 성 우 (7~12월령)</td><td rowspan="2">송 아 지 (3~6월령)</td></tr><tr><td>착유우</td><td>건유우</td></tr><tr><td>깔 짚</td><td>17.3</td><td>17.3</td><td>10.9</td><td>6.4</td><td>4.3</td></tr><tr><td>후리스톨</td><td>9.5</td><td>13.2</td><td>8.3</td><td>6.4</td><td>4.3</td></tr></table>						시설형태	경 산 우		초 임 우 (13~24월령)	육 성 우 (7~12월령)	송 아 지 (3~6월령)	착유우	건유우	깔 짚	17.3	17.3	10.9	6.4	4.3	후리스톨	9.5	13.2	8.3	6.4	4.3										
시설형태	경 산 우		초 임 우 (13~24월령)	육 성 우 (7~12월령)	송 아 지 (3~6월령)																														
	착유우	건유우																																	
깔 짚	17.3	17.3	10.9	6.4	4.3																														
후리스톨	9.5	13.2	8.3	6.4	4.3																														
(다) 돼지																																			
<table><tr><td rowspan="3">구 분</td><td rowspan="3">웅돈</td><td colspan="4">번 식 돈</td><td colspan="4">비 육</td></tr><tr><td rowspan="2">임신돈</td><td rowspan="2">분만돈</td><td rowspan="2">종부 대기돈</td><td rowspan="2">후보돈</td><td colspan="2">자돈</td><td rowspan="2">육성돈</td><td rowspan="2">비육돈</td></tr><tr><td>초기</td><td>후기</td></tr><tr><td>두당소요면적</td><td>10.4</td><td>3.1</td><td>4.0</td><td>3.1</td><td>3.1</td><td>0.2</td><td>0.3</td><td>1.0</td><td>1.5</td></tr></table>						구 분	웅돈	번 식 돈				비 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두당소요면적	10.4	3.1	4.0	3.1	3.1	0.2	0.3	1.0	1.5
구 분	웅돈	번 식 돈						비 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두당소요면적	10.4	3.1	4.0	3.1	3.1	0.2	0.3	1.0	1.5																										
①자돈초기(20kg미만), 자돈중기(20~30kg미만), 육성돈(30~60kg미만), 비육돈(60kg 이상) ②포유중인 자돈은 두수에서 제외 (라) 닭																																			
<table><tr><td>구 분</td><td>소요면적</td><td>산정방식</td></tr><tr><td>산란 성계, 종계</td><td>0.22㎡/수</td><td rowspan="3">①성계 1수 = 육성계 2수 = 병아리 4수 ②병아리(3주령미만), 육성계(3주령~18주령미만), 성계(18주령이상)</td></tr><tr><td>산란육성계</td><td>0.16㎡/수</td></tr><tr><td>육계</td><td>0.1㎡/수</td></tr></table>						구 분	소요면적	산정방식	산란 성계, 종계	0.22㎡/수	①성계 1수 = 육성계 2수 = 병아리 4수 ②병아리(3주령미만), 육성계(3주령~18주령미만), 성계(18주령이상)	산란육성계	0.16㎡/수	육계	0.1㎡/수																				
구 분	소요면적	산정방식																																	
산란 성계, 종계	0.22㎡/수	①성계 1수 = 육성계 2수 = 병아리 4수 ②병아리(3주령미만), 육성계(3주령~18주령미만), 성계(18주령이상)																																	
산란육성계	0.16㎡/수																																		
육계	0.1㎡/수																																		
(마) 오리																																			
<table><tr><td>구 분</td><td>소요면적</td><td>산정방식</td></tr><tr><td>산란용 오리</td><td>0.55㎡/수</td><td rowspan="2">①성오리 1수 = 육성오리 2수 = 새끼오리 4수 ②산란용: 성오리(18주령이상),육성오리(3주령~18주령미만), 새끼오리(3주령미만) ③육용오리: 성오리(6주령이상), 육성오리 : 3주령~6주령미만, 새끼오리 : 3주령미만</td></tr><tr><td>육 용 오 리</td><td>0.3㎡/수</td></tr></table>						구 분	소요면적	산정방식	산란용 오리	0.55㎡/수	①성오리 1수 = 육성오리 2수 = 새끼오리 4수 ②산란용: 성오리(18주령이상),육성오리(3주령~18주령미만), 새끼오리(3주령미만) ③육용오리: 성오리(6주령이상), 육성오리 : 3주령~6주령미만, 새끼오리 : 3주령미만	육 용 오 리	0.3㎡/수																						
구 분	소요면적	산정방식																																	
산란용 오리	0.55㎡/수	①성오리 1수 = 육성오리 2수 = 새끼오리 4수 ②산란용: 성오리(18주령이상),육성오리(3주령~18주령미만), 새끼오리(3주령미만) ③육용오리: 성오리(6주령이상), 육성오리 : 3주령~6주령미만, 새끼오리 : 3주령미만																																	
육 용 오 리	0.3㎡/수																																		

	(바) 양 <table border="1" data-bbox="347 277 705 362"> <tr> <th>구 분</th><th>수당면적</th></tr> <tr> <td>면양, 산양</td><td>1.3㎡</td></tr> </table> (사) 사슴 <table border="1" data-bbox="347 421 705 586"> <tr> <th>구 분</th><th>수당면적</th></tr> <tr> <td>꽃사슴</td><td>2.3㎡</td></tr> <tr> <td>레드디어</td><td>4.6㎡</td></tr> <tr> <td>엘크</td><td>9.2㎡</td></tr> </table> (2) 반추가축은 축종별 생리상태를 고려하여 (1) 축사면적의 2배 이상의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구조의 경우 축사시설면적의 2배 이상을 축사 내에 추가 확보하여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다. (3)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같은 축사 내에서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병행사육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유기가축과 일반가축(무항생제 사육가축 포함)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입식시기가 경과한 일반가축을 유기가축 축사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유기가축과 일반 가축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산란계의 경우 자연일조시간을 포함하여 총 1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공광으로 일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 분	수당면적	면양, 산양	1.3㎡	구 분	수당면적	꽃사슴	2.3㎡	레드디어	4.6㎡	엘크	9.2㎡
구 분	수당면적												
면양, 산양	1.3㎡												
구 분	수당면적												
꽃사슴	2.3㎡												
레드디어	4.6㎡												
엘크	9.2㎡												
다. 자급사료 기반	(1) 초식가축의 경우 가축 1두당 확보하여야 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는 다음과 같다. (사료작물재배지는 임차 하거나 계약재배가 가능하다.) (가) 한·육우 : 목초지 2,475㎡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825㎡ (나) 젖소 : 목초지 3,960㎡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1,320㎡ (다) 면·산양 : 목초지 198㎡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66㎡ (라) 사슴 : 목초지 660㎡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220㎡ 다만,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조사료를 도입할 경우,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면적을 일부 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육우는 374㎡/두, 젖소는 916㎡/두 이상의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1)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가축의 입식조건(입식시기 등) 및 번식방법이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반가축을 유기축산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가축의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부터 전환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육성축 및 성축의 유기축산물 전환을 시작 할 수 있다. (가) 최초 인증 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전체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나) 원유생산용·알생산용·육용생산용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마. 전환기간	(1)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된다. 다만, 전환기간이 4개월 이상인 축종인 경우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전환기간의 2/3 범위 내에서 유기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가축 개체별, 개체군별, 축사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동일농장에서 가축·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를 동시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를 유기농림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관리하여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해당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에서 생산된 사료를 유기사료로 급여가 가능하다.
바. 사료 및 영양관리	(1)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가 유기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급여하여야 한다. (2)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되고 생초나, 건초 등 조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3)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물질의 비의도적인 혼입은 3%내에서 인정한다. (4)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 및 보조사료는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사. 동물복지및 질병관리	(1)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을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사 또는 투약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비치하거나 관련 고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축산물의 출하시에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났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확인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 유기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 (2) 인증품 출하시 친환경농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별표 3 제7호의 기준을 준수하는 취급자로 HACCP을 적용하는 작업장에 위탁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원유를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시유상태로 가공하는 경우 (나)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는 경우 (다) 기타 인증품을 직접 포장하지 않고 위탁하여 포장하는 경우 (4)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1)의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생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자.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차. 기타	(1)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비치하여야 하는 문서는 1년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무농약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영농관련 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운(耕耘), 파종(播種), 재식(栽植), 시비(施肥), 잡초관리, 병해충 관리 등 주요 농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 (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재배포장에 투입된 모든 영농자재의 사용량과 사용목적 및 영농자재 구입처 (다)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 (라) 최근 1년간의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량,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 (2)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배포장용 수·종자	(1) 버섯류 등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에 사용된 배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토양검정결과 토양비옥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集積)된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 (3) 재배포장의 토양에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최근 1년 동안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5) 종자는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로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및 육묘과정이 무농약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7) 재배포장 주변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완충지대를 설정한 경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
다. 재배방법	(1) 화학비료는 최근 2년 이내에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3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세워 사용하여야 한다. (2) 병해충 관리를 위해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일반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무농약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나목 세척 및 소독 기준에 따른다. (3)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로 규칙 별표 3 제4호라목(6) 단서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농산물의 친환경농산물 표시는 삭제하여야 한다. (4) 인증품 출하시 친환경농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5)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별표 3 제7호의 기준을 준수하는 취급자에게 위탁·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인증품을 직접 포장하지 않고 위탁하여 포장하는 경우 (나) 벼, 보리 등 도정이 필요한 경우 (다) 세척, 절단 등 단순처리가 필요한 경우 (6)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중 일반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생산자(농가) 단위 또는 최대 6톤 이내로 구성된 롯트 단위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 양액재배에서 발생하는 폐양액은 하천 또는 호소로 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병행생산의 경우 무농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비치하여야 하는 문서는 1년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5. 무항생제 축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최근 1년간의 동물용의약품의 구매량,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을 기록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량과 해당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축사 및 사육조건	(1) 축사의 밀도 조건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과 사슴은 유기축산물의 축사 밀도를 따른다. (2)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같은 축사에서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의 병행사육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입식시기가 경과한 일반가축을 무항생제 가축 축사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1)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가축의 입식조건(입식시기 등) 및 번식방법이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반가축을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가축의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부터 전환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육성축 및 성축의 무항생제축산 전환을 시작 할 수 있다. (가) 최초 인증 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전체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나) 원유생산용·알생산용·육용생산용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라. 전환기간	(1)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된다. 다만, 전환기간이 4개월 이상인 축종인 경우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전환기간의 2/3 범위 내에서 무항생제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가축 개체별, 개체군별, 축사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사료 및 영양관리	(1)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가 무항생제 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급여하여야 한다. (2) 가축에게 합성착색제를 급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을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사 또는 투약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비치하거나 관련 고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축산물의 출하시에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났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확인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 무항생제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 (2) 인증품 출하시 친환경농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별표 3 제7호의 기준을 준수하는 취급자로 HACCP을 적용하는 작업장에 위탁·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원유를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시유상태로 가공하는 경우 (나)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는 경우 (다) 기타 인증품을 직접 포장하지 않고 위탁하여 포장하는 경우 (4)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1)의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생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자. 기타	(1)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비치하여야 하는 문서는 1년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6. 저농약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영농관련 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운(耕耘), 파종(播種), 재식(栽植), 시비(施肥), 잡초관리, 병해충 관리 등 주요 농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 (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재배포장에 투입된 모든 영농자재의 사용량과 사용목적 및 영농자재 구입처 (다)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 (라) 최근 1년간의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량,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 (2)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1) 토양검정결과 토양비옥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集積)된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 (2)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최근 1년 동안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다. 재배방법	(1) 화학비료는 최근 2년 이내에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2이하 범위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세워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저농약 인증기준(살포횟수 및 사용시기 등)에 적합하게 사용 계획을 세워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저농약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일반 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잔류농약이 해당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이상 검출된 경우 친환경농산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없다. (3) 인증품 출하시 친환경농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별표3제7호의 기준을 준수하는 취급자에게 위탁·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인증품을 직접 포장하지 않고 위탁하여 포장하는 경우 (나) 벼, 보리 등 도정이 필요한 경우 (다) 세척, 절단 등 단순처리가 필요한 경우 (5)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양액재배에서 발생하는 폐양액은 하천 또는 호소로 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병행생산의 경우 저농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유기합성농약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비치하여야 하는 문서는 1년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포장 과정(취급자)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경영관련 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구입한 원료 농산물의 일자별 수량, 생산자, 인증번호, 공급자 등에 관한 자료 및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 (나) 구입한 원료 농산물의 사용량, 제품생산량 등 재포장 과정에 대한 자료 (다) 원료 농산물 및 재포장품의 재고량에 관한 자료 (라) 인증품의 판매량, 판매처, 판매일자 등에 관한 자료 (2) 일반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농산물의 취급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1년 이상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작업기록 및 이력관리	(1) 작업기록을 통해 입고량, 재고량, 출하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현 재고량=입고량-출하량-폐기량) (2) 출하한 농산물의 롯데번호 또는 바코드 등 식별체계를 통해 농산물의 입고, 작업, 출하 등의 이력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원료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과 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산물에 화학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친환경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나목 세척 및 소독 기준에 따른다. (3) 원료 친환경농산물의 수송, 저장 등의 과정에서(재포장을 위해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내기 이전의 전 과정) 인증표시가 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또는 같은 품목에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작업공간에서 재포장 하거나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같은 공간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증종류가 다른 친환경농산물을 혼합하여 낮은 단계의 인증종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 원료의 구매, 저장, 선별, 포장 등 취급 전 과정에서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작업장의 소독을 위해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자, 제품명, 방법, 목적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7)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재포장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수입자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다음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농산물의 수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나) 수입신고확인증 등 농산물 수입관련 증빙자료 (2)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작업기록 및 이력관리	(1) 보관창고 또는 작업장에 농산물 입고 및 출하에 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기록장에는 다음의 필수기록 사항과 이력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입고이력 : 입고일자, 물량, 품목, 생산자 또는 수출자명·원산지, 롯트번호 (나) 출하이력 : 출하한 판매처명, 판매처 주소, 날짜, 품목, 물량, 롯트번호 또는 리콜할 수 있는 번호체계
다.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유기농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기농산물의 품질 및 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거나 농산물에 화학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 수입 전 과정에서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작업공간에서 동시에 취급하거나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같은 공간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작업장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에 적합하거나 이에 준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 작업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시설기준을 적용한다. (4) 농산물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유기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나목 세척 및 소독 기준에 따른다. (5) 작업장의 작업구역, 생산물의 저장 및 수송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7)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덩(페로몬 및 전기유혹 덩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구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8)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0)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비치하여야 하는 문서는 1년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토양오염우려기준(별표 3) <개정 2009.6.25>

(단위: mg/kg)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구리	150	500	2,000
비소	25	50	200
수은	4	10	20
납	200	400	700
6가크롬	5	15	40
아연	300	600	2,000
니켈	100	200	500
불소	400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시안	2	2	120
페놀	4	4	20
벤젠	1	1	3
톨루엔	20	20	60
에틸벤젠	50	50	340
크실렌	15	15	4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벤조(a)피렌	0.7	2	7

※ 비고

- 1지역: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 2지역: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 3지역: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묵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지하수의 수질기준(별표 4) <개정 2010.2.16>

1.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mg/L)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항목	수소이온농도(pH)	5.8 ~ 8.5	6.0 ~ 8.5	5.0 ~ 9.0
	총대장균군	5,000 이하 (균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일반오염물질 (4개)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유기인	0.0005 이하	0.0005 이하	0.0005 이하
	페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납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6가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특정유해물질 (15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별표2)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심사원의 지정

(1)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나)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해 공정한 인증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심사원을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나. 서류심사

(1)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서류심사는 신청서류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3)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신청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나)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다) 기타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4) 서류심사를 통해 과거의 재배·사육내역과 앞으로의 재배·사육계획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6)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이 현재 재배하고 있는 전체 농산물의 재배내역 및 판매내역과 최근 1년간의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구매량과 구매처, 사용량, 재고량(농림산물 생산자에 한함)

(나) 신청인이 현재 사육하는 전체 가축의 사육내역 및 판매내역과 최근 1년간의 동물용 의약품 구매량과 구매처, 사용량, 재고량(축산물 생산자에 한함)

(다) 신청인이 현재 수입·취급하고 있는 전체 농산물의 구매량과 구매처 및 판매량과 판매처(수입·취급자에 한함)

(라) 별표 1 인증부가기준에서 신청인이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규정한 항목에 대한 이행계획서(공통사항)

다. 현장심사

(1) 인증심사원은 농장, 수입·취급 작업장을 방문하여 생산·수입·취급 중인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현장심사는 작물이 생육중인 시기, 가축이 사육중인 시기, 농산물을 수입·취급중인 시기에 실시하고 신청한 농산물의 생산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현장심사를 할 수 없다.

(3) 현장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 신청한 내역과 재배·사육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

- 1) 인증 신청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재배면적이 일치하는 지
- 2) 인증 신청한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지, 축사면적 등이 일치하는 지
- 3) 인증 신청한 취급·수입과정이 신청한 내역과 일치 하는 지

(나) 생산계획서 및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보관·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라) 규정된 인증기준의 각 항목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양, 재배용수, 생산물(이하 생육중인 ‘작물체’를 포함한다)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하 ‘검사’라 한다.)을 실시한다.

(5)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농림산물

1)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토양(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용수 :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고철야적지 주변지역,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폐기물적치·매립·소각지 주변지역, 금속광산 주변지역, 신청이전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지역,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주변지역 등

⑤ 토양(잔류농약) :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을 사용한 지역,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지역(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에 한함)

⑥ 용수 : 최근 3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배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에 한함)

2) 생산물 :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관행재배지로부터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 병행생산의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결과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 농가("B"유형에 한함)

3) 퇴비 : 유기·무항생제 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에서 유래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유기농산물에 한함)

(나) 축산물

1) 토양·용수 검사 : 농림산물의 검사대상에 따름

2) 사료검사 : 유기사료 또는 무항생제 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지 않았거나 사료에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축산물 : 사육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B” 유형에 한함)

(다) 수입자·취급자

1) 용수 : 취급과정에서 세척하는 경우로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수질검사성적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수도법」에 따른 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생산물 : 농산물이 혼합되는 경우, 취급시설에서 일반농산물을 병행하여 취급하는 경우

(6)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농림산물

1) 재배포장의 토양

㉠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설정된 성분 중 해당지역에서 오염이 우려 되는 특정성분(특정성분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유기인, 시안을 검정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5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분(해당 기준을 적용함)

㉡ 토양에 잔류되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2) 용수 : 수역별로 농업용수(하천·호소의 경우 ‘Ⅳ’ 등급을 의미함)또는 먹는물 기준이 설정된 성분

3) 생산물 : 검출빈도가 높은 잔류농약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4) 퇴비 : 잔류항생 물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퇴비의 중금속 검사성분(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나) 축산물

1) 토양·용수 검사 : 농림산물의 기준에 따름

2) 사료검사 : 사료공정규격에 따라 사료에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성분

3) 축산물 :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7) 검사방법은 검사 대상별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정시험방법을 따르며, 토양의 잔류농약검사는 농산물의 공정시험법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분석방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능를 향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8)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재배포장의 토양은 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의 수거지점을 선정하여 채취한다.

(나) 생산물은 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물 재배지 형태 또는 적재상

태·진열형태 등을 고려하여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6개소 이상의 수거 지점을 선정하여 채취한다. 다만, 외관 및 냄새 등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 할 수 있다.

(9) 인증심사원은 현장심사과정에서 농장(포장)소재지 주소, 재배면적, 사육면적, 사육두수 등 인증신청 사항 중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정사항을 기록하여 신청인의 확인을 받아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라. 추가심사

(1)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로 인증기준에 규정된 심사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추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나 재배여건, 생육시기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나) 신청인이 제시한 이행계획 중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마. 심사결과보고

(1)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인증심사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결과보고서와 인증심사서류에 인증기준의 모든 구비요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3) 현장심사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검사성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심사결과의 판정

(1)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자로 인증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이상을 정하거나,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제1호가목의(2)와(3)을 적용한다.

(3)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만 적합판정을 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심사원에게 추가심사를 하도록 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2. 단체신청의 심사 방법

가. 출장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단체신청의 경우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단체의 유형을 구분한다.

(1)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는 "A"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소속회원은 신청, 계약 등 가입절

차를 거쳐 표준화된 영농방법을 실천 할 것

(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생산지침, 생산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조사체계, 위반자 제재조항 등을 문서화한 내부규정을 갖출 것

(다) 소속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자체 벌칙을 부과 할 것

(라) 연 1회 이상 인증기준과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 할 것

(마) 인증품은 단체명의로 표시하여 출하 하고 단체에서 표시사항 등을 관리할 것

(바) (가)~(마)에 따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고 이를 문서로 보관할 것

(2) (1)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는 “B” 유형으로 분류한다.

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라 실시한다

다. 표본심사

(1) 나목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사 중 농가면담과 생산물 검사는 가목에서 분류한 단체의 유형에 따라 해당 표본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구성인 수가 6인 미만인 경우 신청인 전체를 대상으로 제1호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다.

구성원 수(호)	6 ~ 15	16 ~ 24	25 ~ 35	36 ~ 48	49 ~ 63	64 ~ 80	82 ~ 99	100 ~ 120	121 이상
표본 농가	A 3 이상	4 이상	5 이상	6 이상	7 이상	8 이상	9 이상	10 이상	10% 이상
	B 6 이상	8 이상	10 이상	12 이상	14 이상	16 이상	18 이상	20 이상	20% 이상

(2) 표본농가는 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서류심사과정에서 잠재적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농가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라. 현장심사과정에서 잠재적 부적합 사항이 표본농가의 1/2이하로 확인된 경우로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해 현장에서 표본농가와 같은 수만큼을 2차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추가 심사를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보고는 제1호 마목에 따라 심사한 농가 전체에 대해 실시하고, 단체의 유형분류 근거를 추가하여야 한다.

바. 심사결과 판정

(1) 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라목에 따라 추가심사를 하여 전체가 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인 자를 제외하고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 친환경농산물 인증번호 부여방법(별표 3)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한 경우

가. 시·도별 지정번호(00) - 시·군별 지정번호(00) - 친환경농산물 종류(0) - 해당 시·군별로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예 : 00-00-0-0)

나. 시도, 시·군의 번호는 아래와 같으며, 시·군이 없는 특별시·광역시에는 시·군별 지정번호란을 “00”으로 한다.

다. 지정번호가 부여된 시·군 외에 시·군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 시·도내 시·군의 마지막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된 시·군 지정번호 중 선순위 지정번호를 사용한다.

라.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별 번호는 유기농림산물(1), 유기축산물(2), 무농약농산물(3), 저농약농산물(4), 무항생제축산물(5), 취급자(6), 수입자(7)로 한다.

마. 시·군별로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는 해당 시·군의 친환경농산물종류별 일련번호로 한다.

2. 전문인증기관이 인증한 경우

가. 국내산농산물은 인증기관 지정번호(0) - 친환경농산물 종류(0) - 인증일련번호(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예 : 0 - 0 -0)

나.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번호는 제1호라목을 따르고, 인증일련번호는 해당 전문인증기관의 친환경농산물종류별 일련번호로 한다.

<시·도, 시·군별 코드번호표>

시도별 지정번호	시·군별 지정번호	비고
서울특별시(01)		예) 서울시에서 유기농산물을 첫번째로 인증 받은 경우 01-00-1-01
부산광역시(02)	기장군(01)	
대구광역시(03)	달성군(01)	
인천광역시(04)	강화군(01), 옹진군(02)	
광주광역시(05)		
대전광역시(06)		
울산광역시(07)	울주군(01)	
경기도 (10)	수원시(01), 성남시(02), 의정부시(03), 안양시(04), 부천시(05), 광명시(06), 동두천시(07), 안산시(08), 고양시(09), 과천시(10), 구리시(11), 평택시(12), 남양주시(13), 오산시(14), 시흥시(15), 군포시(16), 의왕시(17), 하남시(18), 파주시(19), 이천시(20), 용인시(21), 양주군(22), 여주군(23), 화성시(24), 광주시(25), 연천군(26), 포천군(27), 가평군(28), 양평군(29), 안성시(30), 김포시(31)	예) 이천시에서 무농약농산물로는 첫번째로 인증 받은 경우, 10-20-3-01

사도별 지정번호	시·군별 지정번호	비고
강원도 (11)	춘천시(01), 원주시(02), 강릉시(03), 동해시(04), 태백시(05), 속초시(06), 삼척시(07), 홍천군(08), 횡성군(09), 영월군(10), 평창군(11), 정선군(12), 철원군(13), 화천군(14), 양구군(15), 인제군(16), 고성군(17), 양양군(18)	
충청북도 (12)	청주시(01), 충주시(02), 제천시(03), 청원군(04), 보은군(05), 옥천군(06), 영동군(07), 진천군(08), 괴산군(09), 음성군(10), 단양군(11), 증평군(12)	
충청남도 (13)	천안시(01), 공주시(02), 보령시(03), 아산시(04), 서산시(05), 논산시(06), 금산군(07), 연기군(08), 부여군(09), 서천군(10), 청양군(11), 홍성군(12), 예산군(13), 태안군(14), 당진군(15), 계룡시(16)	
전라북도 (14)	전주시(01), 군산시(02), 익산시(03), 정읍시(04), 남원시(05), 김제시(06), 완주군(07), 진안군(08), 무주군(09), 장수군(10), 임실군(11), 순창군(12), 고창군(13), 부안군(14)	
전라남도 (15)	목포시(01), 여수시(02), 순천시(03), 나주시(04), 광양시(05), 담양군(06), 곡성군(07), 구례군(08), 고흥군(09), 보성군(10), 화순군(11), 장흥군(12), 강진군(13), 해남군(14), 영암군(15), 무안군(16), 함평군(17), 영광군(18), 장성군(19), 완도군(20), 진도군(21), 신안군(22)	
경상북도 (16)	포항시(01), 경주시(02), 김천시(03), 안동시(04), 구미시(05), 영주시(06), 영천시(07), 상주시(08), 문경시(09), 경산시(10), 군위군(11), 의성군(12), 청송군(13), 영양군(14), 영덕군(15), 청도군(16), 고령군(17), 성주군(18), 칠곡군(19), 예천군(20), 봉화군(21), 울진군(22), 울릉군(23)	
경상남도 (17)	창원시(01), 마산시(02), 진주시(03), 진해시(04), 통영시(05), 사천시(06), 김해시(07), 밀양시(08), 거제시(09), 양산시(10), 의령군(11), 함안군(12), 창녕군(13), 고성군(14), 남해군(15), 하동군(16), 산청군(17), 함양군(18), 거창군(19), 합천군(20)	
제주특별자치도 (18)	제주시(01), 서귀포시(02)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친환경농산물표시 요령(별표 4)

1. 생산자가 표시하는 경우

(가) 생산자가 표시하는 경우 친환경농산물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산물 표시사항		
	생산자	친환경작목반
	인증번호	10-21-1-*
	전화번호	031-***-****
	품목	유기재배 딸기
	산지	경기도 용인시
	생산연도	2010(곡류에 한함)
인증기관명	무게 또는 개수	100g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도형은 규칙 별표 2의 작도법에 따라 인증 받은 종류에 맞게 사용하고 하단의 인증기관명은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 명칭을 표시한다.

(2) 생산자는 인증서에 기재된 생산자명(단체의 경우 단체명)을 표시하되, 단체로 인증 받은 경우로 개별 생산자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로 표시한다.

(3) 인증번호는 해당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4) 전화번호는 생산자의 연락처를 표시한다.

(5) 품목은 인증 받은 품목명칭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농산물의 일반적인 품목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6) 산지는 국내산의 경우 재배지의 시·군·구명을 기재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해당국가명을 기재한다. 다만, 여러 시·군·구에서 재배되는 경우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기재하여야 하는 콩나물, 숙주나물 등의 품목은 국내산으로 표기 할 수 있다.

(7) 무게 또는 개수는 해당 인증품의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한다.

2. 취급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여 표시하는 경우

(가) 취급자가 표시하는 경우 친환경농산물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산물 표시사항		
	취급자	친환경유통센터
	인증번호	10-04-6-
	전화번호	031-***-****
	작업장 주소	경기 안양 ***
	품목	유기재배 딸기
	산지	경기도 용인시
	생산연도	2010(곡류에 한함)
인증기관명	무게 또는 개수	100g
롯데번호 또는 바코드	01-6-23-28	
생산자(인증번호)	친환경작목반(10-21-1-*)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표시도형은 규칙 별표 2의 작도법에 따라 원료농산물의 인증종류에 맞게 사용하고 하단의 인증기관명은 취급자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 명칭을 표시한다.
- (2) 취급자는 인증서에 기재된 취급자의 업체명을 표시 한다.
- (3) 인증번호는 해당 취급자의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4) 작업장 주소는 취급자의 작업장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한다.
- (5) 품목은 원료농산물의 품목명칭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농산물의 일반적인 품목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6) 산지는 원료농산물의 산지를 제1호나목(6)에 따라 표시한다.
- (7) 무게 또는 개수는 해당 인증품의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한다.
- (8) 롯데번호 또는 바코드는 원료농산물의 입출고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롯데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 (9) 생산자(인증번호)는 원료농산물의 생산자 명과 인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한 농산물이 2개 이상의 인증번호의 인증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별표 5)

1. 생산과정조사

가. 출장소장 또는 전문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 또는 작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주기는 인증 건별로 연2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과 같이 조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단체의 경우 별표2 제2호 유형별 표본농가수 이상을 조사한 경우1회 조사로 한다.)

(1) 별표2 제2호가목의 "A" 유형에 해당되는 단체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고 그 기간 동안 인증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조사주기를 연1회까지 경감할 수 있다.

(2)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생산물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조사주기를 연3회 이상으로 강화 한다.

다. 조사시기는 가급적 인증기준 위반의 우려가 가장 높은 시기(일반재배에서 농약을 주로 사용하는 시기 등)에 실시하고 신규인증의 경우로 최초 수확 3개월 이전에 인증서가 교부된 경우 최초 수확이전에 반드시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항목별 세부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영농관련자료 또는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2) 인증품의 출하내역을 확인한다.
- (3)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 (4)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 (5)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 (6)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여부를 확인한다.
- (7) 수입자 또는 취급자의 경우 수입·취급중인 농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실제출하여부를 확인한다.

마. 조사원은 생산과정조사 중 필요한 경우 잔류농약 등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물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다만, 저농약농산물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를 초과하거나 해당농산물에 비적용 농약성분이 검출된 경우에 한한다.)
- (2) 농약사용흔적의 발견 등 인증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경우
- (3) 영농관련자료 또는 경영관련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유통과정조사

가. 출장소장은 인증품 판매장·취급작업장을 방문하여 인증품의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주기는 사·군별로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 조사시기는 가급적 인증품의 유통물량이 많은 시기에 실시하고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품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가 인증품을 취급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유

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항목별 세부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 (2)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 (3) 취급중인 농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산지에서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한다.
- (4)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조사원은 유통과정조사 중 필요한 경우 잔류농약 등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최근 1년 이내에 해당업체에서 취급중인 인증품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다만, 저농약농산물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를 초과하거나 해당농산물에 비적용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 한한다.)
- (2)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품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에서 인증품을 취급하는 경우
- (3) 비 인증품이 인증품으로 판매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 (4) 기타 유해잔류물질 검출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은 경우(별표 6)

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은 경우의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을 의도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최근 2년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동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7조의5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은 경우의 인증종류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유기농립산물

(1)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등의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을 초과한 경우

나. 유기축산물

(1)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사료를 급여한 경우(사료첨가물을 포함한다.)

(2) 유기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등의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의 1/3을 초과한 경우

다. 무농약농산물

(1)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등의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를 초과한 경우

라. 무항생제축산물

(1)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사료를 급여한 경우(사료첨가물을 포함한다.)

(2)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등의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의 1/3를 초과한 경우

마. 저농약농산물

(1) 저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농약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등의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바. 수입·취급자

(1) 친환경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등의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 또는 축산물의 유해물질잔류허용기준의 1/3를 초과한 경우

(3)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5.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

[제2009-27호, 농촌진흥청고시, 2009.8.3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유기농산물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친환경유기농업 실천 농가에게 자재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유기농자재”라 함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를 말한다.
2. “심의회”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심의회를 말한다.
3. “전문위원회”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2 제6항에 따른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4. 신청인"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검토신청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이하 “자재”라 한다)의 목록공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자료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검토신청서를 매 분기 말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공시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관련 자료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등재된 자재의 적용대상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련자료 또는 시험 성적서(재배시험·약효약해시험 등)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목록 등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3조제1항의 목록공시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⑥ 제3조제2항의 목록공시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⑦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에 필요한 시험·검사 등에 대한 성적서 발급기관은 **별표3**과 같다.

제4조 (검토기준) ① 자재의 공통 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표1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에 해당되어야 하며, 제5조에서 정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학합성물질 혼입 및 주요 제조공정이 화학적 공정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3. 수입제품은 국제 유기농기준에 의해 등록 또는 공시된 제품에 대하여 검토한다.
4. 시험성적에 따른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등이 안전성 및 효능발현에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5. 재배시험(비효·비해), 약효·약해 및 잔류시험은 해당 작물에 대하여 1회 이상 수행한 포장시험(단, 천적의 경우 실내시험 가능) 성적서를 검토한다. 다만 비해 시험은 분(포트)시험 성적을 인정한다.
6. 검사 및 시험성적은 최초 발행일 기준 5년 이내 시험성적이어야 하되(관련법에 따라 농약 또는 비료로 등록된 자재로서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배제) 자체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병해충관리 분야 원료물질 확인 검사성적서는 자체검사성적을 인정한다.
7. 자재 특성상 제한이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는 사용횟수·사용방법·취급제한 등의 사용조건 제한여부를 검토한다.
8. 동일한 업체에서 원료의 조성 및 종류가 같은 자재를 상표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하지 못하며, 신청업체가 다른 경우는 별도로 검토한다.
9. 미생물을 원료(주·부원료)로 하는 자재는 유효미생물의 분류학적 위치·일반명·학명, 분류동정상의 특성, 동정·생균수 측정, 병원성미생물, 상표명 등을 검토하고, 배지조성자료는 일반명, 화학명,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 등록된 CAS RN(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을 검토하며, 도입미생물의 경우 「식물방역법」상 유해성 여부를 추가로 검토한다.
10. 미생물제제는 속·종명, 보관조건·유통기간·안전관리 등 주의사항의 표기여부를 검토하고 자재의 특성에 따라 유통기간의 설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11. 항생·항균물질이 사용된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12. 유전자변형 면실유박 등을 원료로 한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②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의 세부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는 별표4의 품질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항생물질 및 병원성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미생물의 효과를 포장지에 표시하는 퇴비의 경우

에는 미생물동정 및 병원성미생물 함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부속 축진을 목적으로 첨가하는 미생물은 병원성미생물 함유여부만을 검토할 수 있다.

2. 음식물류 폐기물·폐수처리오니 및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공정규격」 별표1의 퇴비의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물질은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이용한 지렁이분인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가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목초액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공정규격」 중 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박) 및 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액)은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6. 유기질비료는 투입원료별로 주성분 및 유해성분 분석성적을 검토한다.

7. 퇴비, 유기질비료, 토양미생물제제 등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된 자재를 목록공시 신청 할 때에는 비료로 등록된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병해충관리용 자재에 대한 세부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연추출물은 기원물질의 유래, 유효물질의 적용범위·작용기작 및 특이성을 고려하고,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불순물의 악영향 정도를 검토한다. 또한 화학합성물질은 사용할 수 없으나 추출·분리 및 정제 과정상 부득이하게 최소한을 사용한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

2. 조성비 관련 자료는 부재의 명칭,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 등록된 CAS RN(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 용매·용제로서 사입률 및 사용된 부재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한다.

3. 미국 환경보호국(Enviro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정하는 농약제품에 허가된 불활성 성분목록(Inert Ingredients List) 1, 2, 3에 있는 보조제를 사용한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할 수 있으나, 목록 3의 식품등급에 있는 보조제는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4. 독성시험성적은 인축의 위해성 등 안전성, 독성구분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되,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목록공시를 보류할 수 있다.

5. 급성독성이 I 급(맹독성) 또는 II 급(고독성)으로 분류되는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6. 어독성이 I 급, II 급 또는 II s급으로 분류되는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7. 천적, 페로몬 등 물질의 특성상 독성시험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자재는 독성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8.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농약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어 있는 활성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신청하는 자는 적용작물 및 병해충과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성적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 (품질규격 등) ①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②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은 **별표5**와 같다.

③ 목초액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에 따른다.

제6조 (심의 및 결과통보) ①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자재가 제4조의 검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한 목록등재사항 변경신청 자재와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사용·연장불가 또는 재검토 대상으로 결정된 자재는 심의회 심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재 검토를 의뢰한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목록등재 및 삭제)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결과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이 가능한 자재는 등재번호·자재명·자재종류·공시기간 등 관련정보를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목록에 등재된 자재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 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목록에 등재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목록공시 기간이 만료된 자재
3. 제10조에 따른 표시사항 이외의 사항을 현저히 과대 표시하거나, 목록등재 당시의 제품과 다르게 원료나 부자재를 변경 유통시킨 경우
4. 유효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품질규격에 부적합한 경우
5. 제12조에 의한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의 감독상 필요한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8조 (목록공시) 농촌진흥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자재에 대한 관련정보를 목록등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거나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공시기간 등) ① 목록에 등재된 자재의 공시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공시기간 종료 전에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시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재에 대하여는 재공시하지 아니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시사항) 제7조제1항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자재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단,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1. 친환경유기농자재
2. 목록등재번호
3. 자재종류
4. 제품의 특징
5. 적용대상 · 사용방법 ·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단, 병해충관리용 자재 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자재는 병해충명을 표시할 수 없음)
6. 제조장 소재지 및 수입원산지
7. 생산 또는 수입 연월일
8. 유통기간
9.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제11조 (책임보험)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에 따라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감독) 농촌진흥청장은 목록공시된 자재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록공시자재 신청인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업체의 제품 또는 그 원료를 분석 ·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신청 제출서류 기준[별표 1]

1. 공통조건

제 출 서 류	비 고
1.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2. 원료물질 확인 검사성적서	1. 병해충 관리분야 대표물질에 대한 정량정성 분석 검사성적서 2. 유기질 비료 원료별 검사성적서
3. 제조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4.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	시료량 :200g(ml)
5. 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농약 또는 비료로 등록된 자재
6. 책임보험가입증서	1.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농약 잔류허용기 준(MRL)이 설정되어 있는 활성성분 을 함유한 자재(제충국 등) 2. 가입한 경우
7. 사업자등록증	
8. 외국의 자재 인증 등 관련 서류	1. 수입완제품 2. 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 우
9.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 속명·종명, 균수(CFU/g, ml)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
10.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① 병원성 대장균 (<i>Escherichia coli</i>) ② 살모넬라 (<i>Salmonella</i> sp.) ③ 황색포도상구균 (<i>Staphylococcus aureus</i>) ④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i>Listeria monocytogenes</i>) ⑤ 바실러스 세레우스 (<i>Bacillus cereus</i> .)	1.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 2. 퇴비의 경우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 았어도 ①, ②는 반드시 제출
11. 키토산 검사성적서 ① 함유키토산의 점도(cps) ② 함유 키토산(총 글루코스아민 기준)의 최소량(%) ③ 유해중금속(크롬,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니켈)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에 한함
12. 기타 목록공시 신청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시험성적서	

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분야

제 출 서 류	비 고
1. 재배시험 성적서(비효·비해)	1. 토양개량용의 경우 토양개량과 관련된 비효항목 포함 2. 퇴비의 경우 비해 시험만 가능
2. 유해성분 검사성적서 유해중금속(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전량)	
3.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① 테트라사이클린계(Tetracyclines) ② 베타락탐계(Beta-lactams) ③ 설파계(Sulfonamides) ④ 마크로라이드계(Macrolides) ⑤ 아미노글리코시드계(Aminoglycosides)	가축분, 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

3. 병해충 관리용 자재 분야

제 출 서 류	비 고
1.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2. 급성경구·급성경파·어독성 시험성적서	천적 및 페로몬은 생략 가능
3. 잔류 시험성적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어 있는 활성성분을 함유한 자재(제충국 등)
4. 천적 동정 및 이중혼입 검사성적서	천적에 한함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기준 [별표 2]

제출서류	비고
1. 제조조성비 자료	
2.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유효성분에 대한 시험성적서 포함)	
3. 유해성분 검사성적서 유해중금속(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전량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만 해당
4.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① 테트라사이클린계(Tetracyclines) ② 베타락탐계(Beta-lactams) ③ 설파계(Sulfonamides) ④ 마크로라이드계(Macrolides) ⑤ 아미노글리코시드계(Aminoglycosides)	가축분, 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만 해당
5.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① 병원성 대장균 (<i>Escherichia coli</i>) ② 살모넬라 (<i>Salmonella</i> sp.) ③ 황색포도상구균 (<i>Staphylococcus aureus</i>) ④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i>Listeria monocytogenes</i>) ⑤ 바실러스 세레우스 (<i>Bacillus cereus</i>)	1.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 2. 퇴비의 경우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①, ②는 반드시 제출
6. 외국의 자재 인증 등 관련 서류	수입제품에 한함
7. 책임보험가입증서	1.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어 있는 활성성분을 함유한 자재(제충국 등) 2. 가입한 경우
8. 기타 목록공시 기간 연장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시험성적서	

시험·검사 등에 대한 성적서 발급기관[별표 3]

분 야	발 급 기 관
유해성분 검사성적서 원료물질확인 검사성적서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재배시험성적서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의 농업기술원, 농과계통의 대학 및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의 농업기술원, 농과계통의 대학,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우리정부가 보증한 국제기탁기관 및 「특허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특허청장이 지정한 미생물 기탁기관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키토산 검사성적서	다른 법에 따라 해당분야에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사료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농과 및 수의과계통의 대학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잔류 시험성적서	「농약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분야에 지정된 국내 시험연구기관
급성경구·급성경피·어독성 시험 성적서	「농약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분야에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천적 동정 및 이중혼입 검사성 적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별표 4]

사용이 가능한 자재	품 질 규 격
1.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 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5)에 적합할 것
2. 퇴비화된 가축 배설물	○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 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5)에 적합할 것
3. 대두박, 미강유박, 잠용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 또는 그 원료로 만든 제품	○ 부속되지 아니 한 순수 식물성 유박으로서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 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4.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	○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 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5)에 적합할 것
5.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 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5)에 적합할 것

사용이 가능한 자재	품 질 규 격
6.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부산석회, 부산 소석회 제외)	○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7. 미생물제제(미생물추출물 포함)	○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8. 키토산	○ 함유 키토산의 점도(cps) : 10이상 1000이하 ○ 함유 키토산의 최소량(%) : 키토산(총 글루코스아민으로) 1.0%이상 ○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 고시)에 의한 검사방법) · 크롬 : 20mg/kg이하 · 납 : 20mg/kg이하 · 카드뮴 : 0.4mg/kg이하 · 수은 : 0.2mg/kg이하 · 비소 : 4mg/kg이하 · 니켈 : 20mg/kg이하 ※ 단당(글루코스아민)은 제외하고 사용한 용제 표시 ※ 키토산 함량(%) 또는 키토산올리고당 함량(%)으로 제품의 성분표시 ※ 보존기간 2년

[별표 5]

사용이 가능한 자재	품 질 규 격
1. 키토산	○ [별표 4]의 키토산 품질규격과 동일
2. 천 적 ○ 진딧물 천적 ○ 앞굴파리 천적 ○ 응애천적 ○ 온실가루이 천적 ○ 총채벌레천적 ○ 나방류천적 ○ 작은뿌리파리 천적 ○ 기타 천적	○ 생태계나 농작물 등에 전혀 해가 없는 종이어야 하며 외국 천적일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한 위험도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키토산(액상입상)의 시험기준과 방법[별표 6]

1. 키토산 점도 측정법

가. 액상

점도는 300㎖비이커에 액체시료 15㎖를 취하고 증류수 285㎖를 가하여 300㎖(액체시료의 5%솔루션액)로 하여 30분간 교반후 시료의 온도를 $20 \pm 0.5^{\circ}\text{C}$ 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함

나. 입상

점도는 300㎖비이커에 건조한 시료 1.5g을 채취하고, 여기에 증류수 297.0g을 가하여 시료를 교반 분산시킨 후 초산 1.5㎖를 가하여 2시간 교반하여 용해하고 24시간을 방치 및 다시 30분간 교반후 시료용액의 온도를 $20 \pm 0.5^{\circ}\text{C}$ 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함

2. 키토산 함량(글루코오스아민으로 1%이상) 측정법

가. 검액제조

(1) 키토산

글루코오스아민으로 0.04g(키토산 함량이 1.5%인 경우 약 2.66g, 2%인 경우 약 2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산성에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함

(2) 키토산 올리고당

글루코오스아민으로 0.04g(키토산 올리고당 함량이 5%인 경우 약 0.8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액성이 산성인 경우는 중화(PH 7)시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함

나. 시험방법

(1) 위 검액 10㎖를 취하여 염산 7㎖ 및 물을 가하여 20㎖로 하고 이 액 5㎖를 시험관에 취하고 탈기밀봉하여 105° 에서 24시간(또는 121° 에서 5시간, 130° 에서 3시간, 140° 에서 90분)분해한 후 뚜껑을 열어 감압하에 염산 및 물을 제거한 다음 잔류물을 물 5㎖로 녹이고 불용물이 있으면 여과함

(2) 이 여액 1㎖를 마개있는 시험관에 취하고 아세틸 아세톤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한 후 96° 에서 1시간 가열한 후 흐르는 물에서 냉각시키고 이에 96%(v/v)에탄올 20㎖를 가하고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2시간 방치 후 파장 53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함

(3) 따로 D-글루코오스아민 또는 N-아세틸 D-글루코오스아민을 $100 \sim 500 \mu\text{g}$ (D-글루코오스아민으로)/㎖ 함유한 용액 10㎖를 취하여 앞에서의 검액 10㎖를 취하여 이하에 따라 동일하게 조작하여 다음과 같이 총글루코오스아민의 함량을 구함

(4) 총 글루코오스아민(%) =

$$\text{표준용액의농도(글루코오스아민으로, } \mu\text{g/10ml)} \times \frac{S_a}{S_t} \times \frac{10}{\text{검체의 채취량(g)}} \times \frac{100}{10^6}$$

* S_a : 검액의 흡광도, S_t : 표준용액의 흡광도

다. 시액조제

- (1) 아세틸아세톤시액 : 증류 정제한 무색 아세틸아세톤 (BP 138 ~ 140°) 1.5ml에 1.2N 탄산나트륨용액을 가하여 50ml로 함
- (2)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p-Dimethylaminobenzaldehyde)시액 :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 1.6g에 염산 30ml를 가하여 녹이고 96%(v/v)에탄올 30ml를 가하여 혼합함.



6.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시험연구기관 지정

[제2009-28호, 농촌진흥청고시, 2009.9.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은 농촌진흥청 고시 「농촌진흥청 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및 「비료공정규격설정 등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준한다.

제3조(지정신청)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효과 시험연구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정) 유해성분분석 시험연구기관은 [별표 2]과 같다.

제6조(지정) 항생물질분석 시험연구기관은 [별표 3]와 같다.

제7조(지정) 독성 시험연구기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지정) 미생물동정 시험연구기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지정) GMO분석 시험연구기관은 [별표 6]와 같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효과시험연구기관

시험분야	시 험 연 구 기 관
약효 · 약해시험 비효 · 비해시험	○ 국 · 공립시험연구기관 농업과학기술원, 원예연구소(본소), 사과시험장(원예연구소), 배시험장(원예연구소), 난지농업연구소, 제주도 농업기술원, 작물과학원(본원), 호남농업연구소(작물과학원), 영남농업연구소(작물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감귤연구센터(난지농업연구소), 경기도 농업기술원, 광주버섯시험장, 경기북부농업시험장(연천), 강원도 농업기술원, 평창산채시험장, 홍천옥수수시험장, 북부농업시험장(철원), 해안농업시험장,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옥천포도시험장, 단양마늘시험장, 음성시설농업시험장,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논산딸기시험장, 부여토마토시험장, 청양구기자시험장, 예산국화시험장, 태안백합시험장,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 진안숙근약초시험장, 고창수박시험장,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보성차시험장, 해남난지과수시험장, 고흥유자시험장, 구례오이시험장,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의성약초시험장, 성주과채류시험장, 청도복숭아시험장, 상주감시험장,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영양고추시험장,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창원양파시험장, 함양약초시험장, 김해단감시험장, 창원시설화훼시험장, 임업연구원, 국립식물검역소, 생물자원연구소, 풍기인삼시험장, 임업연구원 남부시험장, 국립종자관리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동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중앙대학교 산업대학, 서울시립대학교 문리과대학,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강릉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상지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배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중부대학교 이공대학,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단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우석대학교 이공대학,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순천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구대학교 자연 자원대학, 영남대학교 자연자원대학, 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상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진주산업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약효 · 약해시험 비효 · 비해시험	제주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전주대학교 자연과학부,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충북대학교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한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선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대구가톨릭 대학교 자연대학, 계명대학교 환경대학, 목원대학교 미생물생태 자원연구소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주)경농 부설연구소, (주)동방아그로 부설연구소, 신젠타코리아(주) 부설연구소, 인바이오믹스(주) 부설연구소,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부설연구소, 성보화학(주) 부설연구소, (주)영일케미컬 부설연구소, (주)동부하이텍 농업기술연구소, 한국삼공(주) 농업연구소, 동부정 밀화학(주) 부설연구소, (주)LG 생명과학기술연구원, 삼성에버랜드 (주) 잔디연구소, (주)유일 부설연구소, (주)케이티앤지 중앙연구원, (주)대유 부설연구소, (주)케이아이비씨 부설연구소, (주)그린바 이오텍 부설연구소, (주)장유산업 부설연구소, (주)메가바이오텍부 설 생명공학연구소, (주)이즈텍 기술연구소, (주)한국바이오케미칼 부설연구소, 에스엠비티(주) 기술연구소, (주)테크노그린 부설연구 소, 고려바이오(주) 부설 생물공학연구소, 케이씨피(주) 농업기술연 구소 ○ 민간연구소 한국골프장사업협회 부설 한국잔디연구소,, 송강농업자원연구소, 한 국식물환경연구소, 응용생물시험연구소, 식물보호연구소, 한국생물 안전성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및 민간연구소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재배(비효 · 비해)시험연구기관(지정신청은 농촌진흥청 고시「비료공정규격설 정 등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준함)
---	---

[별표 2] 유해성분 분석기관

시험분야	시 험 연 구 기 관
유해성분 분석	○ 비료관리법 제4조에 의해 농업과학기술원장이 지정한 퇴비원료분석기관 농업과학기술원, 경기도농업기술원, 강원도농업기술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제주도농업기술원, 영남농업시험장, 호남농업시험장, 제주농업시험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충북대학교농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순천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 전북대학교 농대, 경상대학교 농대,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 제주대학교농대, 단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 영남대학교 자연과학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서울본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부산울산경남지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일분석센타(주)부천사업소, 제일분석센타(주)온산사업소, (주)동진분석기술연구소, (주)대유식물영양연구소, 석산환경산업(주),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주)에이앤드에프, 한국환경수도연구소, (주)풍농, (주)코썬중앙연구소, 농협사료축산연구소, (주)조비, 경남정보대학, (주)과학기술분석센타, 동부한농화학(주), 동부한농(주)농업기술연구소, 제주비료(주), (주)세기, 바이콘, 한국협화화학공업(주) ○ 농촌진흥청 고시「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 지정」에 따른 이화학 분석 시험연구기관 -국공립시험연구기관또는검사기관 농업과학기술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전주대학교 농과대학, 농협대학, 전주대학교 자연과학부, 충북대학교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한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선대학교 공동기기센터, 영동대학교바이오지역기술센터

유해성분 분석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주)경농 부설연구소, (주)동방아그로 부설연구소, 신젠타코리아(주) 부설연구소, 인바이오믹스(주) 부설연구소,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부설연구소, 성보화학(주) 부설연구소, (주)동부하이텍동부기술원, 한국삼공(주) 농업연구소, 한미합자제일화학(주) 부설연구소, 동부정밀화학(주) 부설연구소, 동오화학(주)부설연구소, (주)LG생명과학기술연구원, (주)한화 부설연구소, 서한화학(주)부설연구소, (주)영화 부설연구소, (주)오씨아이다스 부설연구소, (주)세릉화학 부설연구소, (주)코썬 부설연구소, 삼성에버랜드(주) 잔디연구소, (주)한농화성 부설연구소, (주)유일 부설연구소, (주)케이티앤지 중앙연구원, (주)대유 부설연구소, (주)케이아이비씨 부설연구소, 동남석유공업(주) 부설연구소, (주)그린바이오텍 부설생명공학연구소, 에스케이(주) 부설연구소, (주)장유산업 부설연구소, (주)흙살림 부설연구소, 한국셀석유(주)부설연구소, 미창석유공업(주) 부설연구소, 아리스타라이프사이언스코리아(주) 부설연구소, 동양제철화학(주) 중앙연구소, (주)랩프런티어, 에스케이케미칼(주) 부설연구소, 에스엠비티(주) 기술연구소, (주)케크노그린 부설연구소, 고려바이오(주) 부설 생물공학연구소 - 민간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 ※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 지정」에 따른 이화학 분석 시험연구기관 중 기업부설연구소 및 민간연구소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분분석 시험연구기관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지정신청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공정규격설정 등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준함)
----------------	---

[별표3] 항생물질 분석기관

시 험 분 야	시 험 연 구 기 관
항생물질분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지청을 포함)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 특별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제2축산위생연구소,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 전라북도·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농협중앙회 축산사료연구소,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 그 밖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지정 고시한 시험연구기관 및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사료검정기관 등 위와 동등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시험연구기관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별표 4] 독성시험 연구기관

시 험 분 야	시 험 연 구 기 관
급성경구 급성경피 어독성	○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농업과학기술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청평내수면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주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전주대학교 자연과학부,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주)경농 부설연구소, (주)동방아그로 부설연구소, (주)동부하이텍 동부기술원, 한국삼공(주) 농업연구소, (주)LG 생명과학기술연구원, (주)바이오톡스텍, (주)캠온 의약연구소 ○ 민간연구소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업화학물질연구센터),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위와 동등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시험연구기관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기

[별표 5] 미생물동정 시험연구기관

시 험 분 야	시 험 연 구 기 관
- 유효미생물 동정 - 유효미생물 동정	○ 국제적으로 인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오염미생물 검사(성적서 제출시인증서 사본첨부) ○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목원대학교(미생물생태자원연구소), 고려대생물환경과학대학(진균분류생태연구실), 서울대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환경미생물자원은행), 서울대자연과학대학(미생물연구소), 서울여대자연과학대학(식물바이러스 유전자은행), 고려대 생명과학대학(특수연구소재 균류수집보존센터), 명지대자연과학대학(희귀유용미생물추출물은행), 한국과학기술원(KAIST)(환경및분자미생물학연구실), 충남대농업생명과학대학(식물병리학및균학연구실), 강원대농업생명과학대학(동충하초은행) ※ 위와 동등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시험연구기관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별표 6] GMO분석 시험연구기관

시 험 분 야	시 험 연 구 기 관
GMO 분석	○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에 근거하여 지정된 GMO분석기관 또는평가기관(주)코젠바이오텍, (주)넥스젠, (주)과학기술분석센타, 한국유전자검사센터※ 위와 동등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시험연구기관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PART2.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유기가공식품분야 규정

1.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0. 1.25] [법률 제09951호, 2010. 1.25, 일부개정]

제23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③ 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5>

④ 제3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방법·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⑤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절차와 기준,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와 선정 기준 및 유기적 취급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와 이를 판매·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포장·용기 등에 유기가공식품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015호, 2008. 6.27, 제정]

제19조(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한 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23조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인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정기심사)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기심사는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받은 후 1년마다 1회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유기가공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우수식품인증기관에 유기가공식품의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제21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2. 유기취급계획서 1부

3. 원료 및 첨가물이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유기가공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 및 시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와 선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유기적 취급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의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유기가공식품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유기가 공식품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서를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 표시 등)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도형(도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2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형을 사용하려는 경우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번호
2. 인증기관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별표4)

구분	기준
가. 일반요건	1) 유기사업자는 유기식품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유기사업자는 유기식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3) 유기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유기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공원료	1)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첨가물, 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되거나 취급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u>5퍼센트</u>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량비율에 관계없이 유기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 원료를 혼합할 수 없다. 3)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래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 4) 물과 소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의 유기 성분 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먹는 물 및 식품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5) 미생물 제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전자변형 미생물에서 유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6) 별표 5의 유기적 취급에 허용하는 물질을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공방법	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 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2) 유기식품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 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다. 3)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4)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식품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5) 저장할 때에 공기, 온도, 습도 등 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며, 건조하여 저장할 수 있다.

※ 유기원료 비율의 계산법

(1) 유기원료의 비율 계산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에 투입된 모든 원료의 중량, 첨가물의 중량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세척, 절단 등 제품생산 전에 버려지는 비가식 부분의 중량과 포장재, 용기 등의 중량은 제외한다.

(2) 원료 및 첨가물 중량의 계측 시점은 해당 원료가 가공 공정에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가공보조제 등 최종 제품에 잔류하지 않는 것은 그 중량은 제외한다.

(4) 유기원료의 비율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의 중량에 대한 유기원료 중량의 비율과 같다.

$$\frac{I_o}{G-WS} = \frac{I_o}{I_o+I_c+I_a} \geq 0.95$$

G : 제품(포장재, 용기 제외)의 중량 ($G=I_o+I_c+I_a+WS$)

I_o : 유기원료[유기농(축)산물+유기가공식품]의 중량

I_c : 비유기 원료(유기인증 표시가 없는 원료)의 중량

I_a : 비유기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제외)의 중량

WS : 물과 소금의 중량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와 선정기준(별표5)

1.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						
명칭(한)	명칭(영)	INS	첨가물	조건	가공 보조제	조건
개암껍질	Hazelnut shells	-	-	-	○	-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	-	-	○	-
구아검	Guar gum	412	○	-	-	-
구연산	Citric acid	330	○	과일 및 채소 제품	○	pH조절
구연산나트륨	Sodium citrate	331 (i)	○	소시지, 난백의 저온살균, 유제품	-	-
구연산칼륨	Potassium citrate	332	○	-	-	-
구연산칼슘	Calcium citrate	333	○	-	-	-
규조토	Diatomaceous earth	-	-	-	○	감미료 및 포도주용, 여과 보조제
글루코노델타 락톤	Glucono delta- lactone	575	○	D-글루코오스를 브로민 수로 산화시켜 생산한 것은 금지	-	-
글리세롤	Glycerol	-	○	식물 추출물	-	-
글리세리드	Glycerides (mono/di)	-	-	-	○	식품의드럼건조용
글리세린	Glycerin	422	○	지방과 기름의 가수분해 로 생산된 것	-	-
나무껍질 성분 제제	Preparation of bark components	-	-	-	○	설탕용
나무수지	Wood resin	-	-	-	○	-
나뭇재	Wood ash	-	○	전통치즈	-	-
난백알부민	Egg white albumin	-	-	-	○	포도주용
레시틴	Lecithin	322	○	표백제 및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얻은 것	○	-
로커스트빈검	Locust bean gum	410	○	유제품, 육제품	-	-
밀랍	Beeswax	901	-	-	○	이형제
백도토	Kaolin	559	-	-	○	-
벤토나이트	Bentonite	559	-	-	○	과일 및 채소제품
사과산	Malic acid	296	○	-	-	-
산소	Oxygen	948	○	-	○	-
산탄검	Xanthan gum	415	○	지방제품, 과일 및 채소, 케이크, 비스킷, 샐러드	-	-
색소	Colors	-	○	식물 추출물, 비합성	-	-
셀룰로오즈	Cellulose	-	-	-	○	재생포장, 고결방지제(염소 표백되지 않은 것), 여과 보조제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524	○	곡류제품	○	설탕 생산 중 pH조절, 설탕 가공 및 전통 제빵 제 품의 표면 처리용

명칭(한)	명칭(영)	INS	첨가물	조건	가공 보조제	조건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	-	-	○	설탕 가공을 위한 pH조정, 개별 급속냉동시 복숭아 제피공정 외 과채류 제피공정에는 사용 금지
수산화칼슘	Calcium hydroxide	526	○	옥수수빵	○	설탕 가공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Magnesium stearate	-	○	-	-	-
식물성기름	Vegetable oils	-	-	-	○	유연제 또는 이형제
쌀가루	Rice meal	-	-	-	○	-
아라비아검	Arabic gum	414	○	우유, 지방 및 과자류 제품	-	-
아르곤	Argon	938	○	-	-	-
아스코르브산	Ascorbic acid	300		자연 형태로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알긴산	Alginic acid	400	○	-	-	-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401	○	-	-	-
알긴산칼륨	Potassium alginate	402	○	-	-	-
에탄올	Ethanol	-	-	-	○	용매
염화마그네슘	Magnesium chloride	511	○	대두제품	○	응고제
염화칼륨	Potassium chloride	508	○	냉동 과일 및 채소, 통조림 과일 및 채소, 채소소스류, 케첩 및 겨자	-	-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	509	○	유제품/지방제품/과일 및 채소/대두제품	○	응고제
오존	Ozone		-	-	○	-
옥수수녹말	Cornstarch	-	○	-	-	-
요오드칼륨	Potassium iodide	-	○	-	-	-
우유배양균	Dairy culture	-	○	-	-	-
운모	Isinglass	-	-	-	○	-
이산화규소	Silicon dioxide	551	○	허브와 향신료의 고결방지제	○	겔 또는 콜로이드 용액으로, 포도주, 과일 및 채소가공
이산화염소	Chlorine dioxide		-	-	○	식품접촉면의 소독 및 살균용, 단 수중 잔류 염소량이 먹는 물 기준치 이내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290	○	-	○	-
이산화황	Sulfur dioxide	220	○	포도주용	-	-
이소프로판올	Isopropanol	-	-	-	○	설탕 제조시 결정화 공정
인산	Phosphoric acid		-	-	○	식품접촉면 및 장비세척에 한함
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	○	유제품	-	-
인산암모늄	Ammonium phosphate	342	○	포도주용으로만, 리터당 0.3mg으로 제한	-	-
인산칼륨	Potassium phosphate	-	○	-	-	-
젖산	Lactic acid	270	○	발효채소제품	○	유제품 응고제, 치즈 생산용 염수 pH조절
제1인산칼슘	Calcium phosphate, monobasic		○	밀가루 팽창제	-	-

명칭(한)	명칭(영)	INS	첨가물	조건	가공 보조제	조건
제2인산칼슘	Calcium phosphate, dibasic	-	○		-	-
제3인산칼슘	Calcium phosphate, tribasic	-	○	-	-	-
젤라틴	Gelatin	-	-	-	○	포도주, 과일 및 채소 가공
주석산	Tartaric acid	334	○	포도주용	○	포도주용
주석산나트륨	Sodium tartrate	335	○	케이크/과자류	○	-
주석산수소 칼륨	Potassium bitartrate	-	○	곡류, 과자류 제품	○	-
주석산칼륨	Potassium tartrate	336	○	곡물류/케이크/과자류	○	-
질소	Nitrogen	941	○	-	○	-
카나우바왁스	Carnauba wax	903	-	-	○	이형제
카라기난	Carrageenan	407	○	유제품	-	-
카라야검	Karaya gum	416	○	-	-	-
카세인	Casein	-	-	-	○	포도주용
캐롭빈검	Carob bean gum	-	○	-	-	-
켈프	Kelp	-	○	농축제 및 식이 첨가물 로만 사용	-	-
탄닌산	Tannic acid	184	-	-	○	포도주 여과보조제
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	500	○	케이크 및 비스킷, 과자류	○	설탕 생산
탄산마그네슘	Magnesium carbonate	504	○	-	-	-
탄산수소 나트륨	Sodium bicarbonate	-	○	팽창제	-	-
탄산암모늄	Ammonium carbonate	503	○	곡물제품, 과자류, 케이크 및 비스킷류	-	-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501	○	곡물류, 케이크 및 비스킷	○	포도 건조에 사용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	170	○	착색을 제외한 모든 기능, 비합성품	○	-
토코페롤	Tocopherol	306	○	지방과 오일의 항산화제	-	-
트라게칸스검	Tragacanth gum	413	○	-	-	-
펄라이트	Perlite	-	-	-	○	여과보조제
펙틴	Pectin	440	○	유제품	-	-
한천(寒天)	Agar	406	○	비합성품	-	-
활석	Talc	553	-	-	○	-
활성탄	Activated carbon	-	-	-	○	-
황산	Sulfuric acid	513	-	-	○	설탕용 추출수 pH조절
황산마그네슘	Magnesium sulfate	-	○	비합성원료에 한함	-	-
황산암모늄	Ammonium sulfate	517	○	포도주용으로만, 리터당 0.3mg 이내	-	-
황산 제1철	Ferrous sulfate	-	○	철분 강화제	-	-
황산칼슘	Calcium sulphate	516	○	케이크 및 비스킷, 대두 제품, 제빵	○	응고제
효모	Yeast	-	-	-	○	비합성, 석유화학계 배양액 및 황산 폐기물 증류액을 사용한 것 금지

2.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선정기준

가. 유기적 취급을 허용하는 물질은 유기농업의 원칙 및 예방 원칙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이해관계자가 물질의 평가를 심의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나.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필수적이며 가장 적합할 것
- 2) 자연적, 생물적,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할 것
- 3) 환경에 대하여 지속 가능할 것
- 4) 인간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증진할 것
- 5) 생산물의 품질 개선 및 보존에 유익할 것
- 6) 광범위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것
- 7)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합성물질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유기적 취급의 기준(별표6)

구 분	기 준
가. 해충 및 병원균 관리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화학적인 방법과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2) 해충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 허용된 살충 물질 등을 차례로 적용하여야 한다. 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금지된 물질 및 방법으로부터 유기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 및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세척 및 소독	1) 유기식품은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식품을 유기재배 및 취급에 금지된 물질,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먹는 물 및 물질목록에 허용된 가공보조제를 식품 표면의 세척제 및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포장	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식품과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포장재는 유기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포함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 4) 유기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물질과 접촉한 재활용된 자재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라. 원료 및 제품의 수송	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제품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송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금지된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3) 수송과정에서 유기식품이 유기식품이 아닌 물질이나 금지된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마. 기록 및 접근 보장	1)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취급 전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최소한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가공과 유통의 유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유기취급계획을 인증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원료, 첨가물, 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투입 자재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가공, 포장, 저장, 운송, 판매, 그 밖에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 지침을 문서로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5)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기관이 파견한 심사원에게 유기식품의 취급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3.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운영지침

[시행 2009.12.16] [고시 제2009-415호, 2009.12.16,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 415호('09.12.16)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유기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유기가공식품”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3. “가공보조제”란 특정한 기술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재료, 식품 또는 그 성분의 가공에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물질 또는 재료로서, 그 자체로는 식품으로 소비되지 않으나 최종 생산물에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5.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제2장 인증제도의 적용

제3조(적용 범위) ① 아래 각 호의 사업자가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고자 하는 자(도축 및 신선편이 가공, 육가공, 유가공, 도정 및 제분 업자 포함)
2.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고자 하는 자
3. 국내에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소분 또는 재포장 하는 자

② 인증품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에 명시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유기원료의 적합여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지정 받은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로 확인한다.

제3장 인증 및 취급기준

제4조(인증기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별표4]에 명시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유기적으로 생산되거나 취급된 것’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거나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2.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 원료’를 판단하는 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가.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는 명칭이 같으면 동일한 종류의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나. 단순 가공된 원료에 대해서는 해당 원료의 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동일하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옥수수분말과 옥수수전분, 토마토폰레와 토마토페이스트는 동일한 원료로 볼 수 있다.

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원료의 동일성 여부는 인증기관이 판단한다.

3. 인증 시제품에 대한 인증심사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인증하지 아니한다.

4. 유기가공식품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사용하는 미생물 제제가 규칙 [별표4] 나. 5)의 ‘유전자변형 미생물에서 유래한 것’과 무관하다는 것은 해당 미생물 제제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증빙서에 의해 확인한다.

6. ‘기계적, 물리적 방법’은 절단, 분쇄, 혼합, 성형, 가열, 냉각, 가압, 감압, 건조, 분리(여과, 원심분리, 압착, 증류), 절임, 훈연 등을 의미하며, ‘생물학적 방법’은 발효, 숙성 등을 의미한다.

7. ‘전리방사선’은 살균, 살충, 발아억제, 성숙의 지연, 선도 유지, 식품 특성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을 의미한다.

8. 유기원료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한다.

나. 인증 받은 유기 첨가물은 유기원료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다.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포함한다.

라.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 또는 첨가물은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 중량 또는 부피로 계산한다.

마. 비유기 첨가물이 포함된 가공 유기원료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료의 유기 원료 비율만큼만 유기원료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제5조(취급기준)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별표6]에 명시된 “유기가공식품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해충을 없애기 위한 ‘예방적 방법’은 서식처 제거, 접근 경로의 차단, 천적의 활용 등을 의미하며, ‘물리적·기계적·생물학적 방법’은 물리적 장벽, 음파, 초음파, 빛, 자외선, 덩, 온도관리 등을 의미한다.

2. ‘허용된 살충 물질’은 규칙 제22조제2항에 관련 [별표5] ‘유기적 취급 허용물질’과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1] 1. 가.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를 의미한다.

제4장 인증 표시

제6조(표시 등) ① 인증받은 사업자는 인증품에 "도형", "인증 기관명", "인증번호"등을 별표1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 제3호의 ‘유기가공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는 영어의 ‘Organic’, ‘Bio’, ‘Eco’ 등이며, 이와 같은 의미의 제3국 언어를 의미한다.

제7조(세부표시기준) ①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그 이외 사항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표시한다.

제5장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기가공식품 표시(별표1)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

Organization name :
 Certificate Number :

1. 표시도형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

Organization name :
 Certificate Number :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1) 도형의 가로 길이(정원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중첩된 부분은 $50/100 \times W$ 로 한다.

(2) 상단 도형은 2개의 겹쳐진 정원 상단 꼭지점을 기준으로 우측원의 가로 및 세로 모두 $50/100 \times W$ 로 표시도형 우측의 작도법에 준하여 곡선으로 표시한다.

나. 표시도형 하단부에 유기가공식품을 표기한다.

다.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라.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마. 표시도형의 글자 색상은 군청색이고, 바탕색은 백색이며, 좌측 원의 색상은 군청색, 우측 원의 색상은 녹색, 가운데 중첩된 원의 색상은 백색이고, 상단 잎사귀 모양의 색상은 연두색이고, 하단부의 글자색상은 백색이며 바탕색은 녹색이다.

바. 배색 비율은 군청색 C100+M60, 녹색 C100+Y100으로 한다.

사.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아.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자.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별표2)

1.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가. 국내 식품

1) 원재료

가)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95퍼센트(%)이상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 농림산물(“전환기”로 표시된 유기농림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농·축·임산물(이하 “유기농산물”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나)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유기농산물과 비 유기농산물을 혼합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당해 식품에 사용하는 용기·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생물분해성 재질이어야 한다.

2) 그 이외의 사항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와 [별표5] 및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수입 식품

1) 가목 1) 가)의 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2) 가목 1) 나)에서 다)까지의 기준과 동목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가. 유기농산물 100퍼센트(%) 사용한 식품

1) 유기농산물 100퍼센트(%)에 해당되는 제품은 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도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2) 표시범위 및 장소

가) “유기 100퍼센트(%)”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시장소는 주표시면 등 제품의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다) 이 고시 제6조 1항에 따른 유기인증 표시와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라)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 하여야 한다.

나. 95퍼센트(%) 이상 유기농산물인 식품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95퍼센트(%) 이상이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2) 표시범위 및 장소

가) “유기” 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시장소는 주표시면 등 제품의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다) 이 고시 제6조 1항에 따른 유기인증 표시와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라)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70퍼센트(%)이상 95퍼센트(%)미만 유기농산물인 식품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7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미만이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2) 표시범위 및 장소

가) 유기라는 용어 앞에 70% 이상에 해당되는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시장소는 주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다) 이 고시 제6조 1항에 따른 유기인증 표시와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라)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70% 미만 유기농산물인 식품

1) 가목 및 다목 외의 식품으로서 제품의 원재료로 특정 유기 농산물을 사용하였지만 그 사용 비율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원재료 함량이 70% 미만인 제품에 한한다.

2) 표시범위 및 장소

가)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 이 고시 제6조 1항에 따른 유기인증 표시와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다)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지정 [제2008-119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08.12.19]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지정 고시

○ 기 관 명 : 한국식품연구원

○ 대 표 자 : 이 무 하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6번지(031-780-9114, Fax 031-780-9264)

○ 지정번호 : 제1호

○ 지정일자 : 2008.12.19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지정현황(2009.11.02 기준)

번호	기 관 명	주 소	지정일자
1	한국식품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6번지	2008.12.19
2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92-3 장양농협 2층	2009.03.12
3	글로벌 유농인영농조합법인	대구시 북구 동호동 492-4번지 (경북농업기술원 농업인 회관)	2009.06.11
4	컨트롤 유니온	Meeuwenlaan 4-6, 8011 BZ, P.O. Box 161, 8000 AD, Zwolle. The Netherlands	2009.06.24
5	에코서트에스에이(ECOCERT SA)	BP47 F - 32600 L'Isle Jourdain France	2009.08.19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현황(2009.11.02 기준)

국가	업체수	국가	업체수
국내	50	터키	4
이탈리아	8	브라질	2
아르헨티나	3	호주	1
미국	2	독일	1
뉴질랜드	1	파라과이	2
콜롬비아	2	태국	2
중국	2	합계	80

유기가공식품인증품목(227종) : 과자류(1번) ~신선편의식품(227번)

유기가공식품 최초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구분	금액
가. 기본 수수료	기본수수료는 인증 신청 1건당 $30 \times (\text{매출액})^{0.5}$ 원으로 한다. 단 10,000원 미만은 버린다. 인증신청 품목이 복수인 경우 추가 1건당 기본수수료의 50%를 가산한다. '매출액'은 인증 대상 품목의 직전 회계연도 연간 매출액을 적용한다. 최초 인증 신청인의 매출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적용한다.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본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매출액 5,000만원 이하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기본 수수료를 면제한다
나. 인증심사원출장비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출장기간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시간,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출장기간은 2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수식품인증센터장의 허락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출장 인원은 2인으로 한다.
다. 인증심사원 수당	심사원 1인당 수당은 230,000원/일로 한다. 수당 산정 인원은 2인으로 한다. 심사원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산업공장에 대한 고급기술자 임금단가를 참조하여 매년 조정한다.
라. 제품시험 수수료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시험기관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 및 감정 수수료 적용
마. 시료운반·조작비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1.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가 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2. 신청인의 현장에서 시험·분석 또는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3. 전문 연구 또는 시험기관에 시험, 분석 또는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수수료를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유기가공식품 평가사항

심사항목	평가사항
일반요건	• 시설도면, 제조공정도, 제품명세 등 인증신청서 상의 모든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가? • 유기취급계획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 가공 및 취급 전반에 걸쳐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가공 및 취급 전반에 걸쳐 대기의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가공 및 취급 전반에 걸쳐 물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금지된 물질 및 방법으로부터 유기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 및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종업원들이 유기취급계획에 대해 훈련 받고 있는가? • 종업원들은 유기 인증기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 사업자는 유기 인증기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가공원료	• 모든 원료에 대한 유기인증서 또는 생산 및 취급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있는가? • 비유기 원료가 사용된 경우 불가피하였는가? 유기원료를 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 비유기 원료가 사용된 경우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에 대한 비유기 원료의 중량 비율이 5% 이하였는가? • 사업자는 비유전자변형 확인서 등 유전자변형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 수질검사성적서가 있었는가? • 검사결과는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였는가? • 소금이 식품기준에 적합하였는가? • 미생물 제제가 사용된 경우 그것이 유전자변형 미생물에서 유래된 것이 아님을 증빙하는 자료가 있었는가? • 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가 사용된 경우 사용된 물질이 허용된 것인가? 그 사용이 불가피하였는가? 최소량만 사용하였는가?
가공방법	• 가공방법은 허용된 방법만을 사용하였는가? • 유기식품에 관한 모든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방사선이 사용되지 않았는가? • 추출을 위해서 허용된 물질만을 사용 하였는가? • 여과를 위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저장을 위해 사용된 방법은 기준에 적합한가?
해충 및 병원균 관리	• 해충과 병원균의 관리를 위해 화학 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이 사용되지 않았는가? • 해충 관리를 위해 허용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는가? •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와 시설에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나 방법으로부터 유기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 및 충분한 예방조치가 취해졌는가?

세척 및 소독	•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유기식품에 잔류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사업자는 허용되지 않은 물질, 해충, 병원균, 기타 이물질로부터 유기식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조치를 취하였는가? • 세척 또는 소독에 사용된 물질은 먹는 물 또는 허용된 가공보조제 외에는 없는가? • 세척제, 살균제, 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포장	• 포장재는 재활용되었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 포장재가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함유 하였거나 접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가? • 합성살균제, 방부제 훈증제 등 금지된 물질이 포장재, 유기, 저장고에 사용되지 않았는가? • 재활용된 자재 또는 용기는 기준에 적합하였는가? • 표시 또는 표시물의 기재사항은 기준에 적합한가?
원료 및 제품의 수송	•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송방법을 선택하였는가? • 수송 장비와 운반용기를 세척, 소독할 때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수송과정에서 유기식품이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관행식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명백히 구분하여 취급하였는가?
기록 및 접근보장	•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취급 전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가? 기록한 자료는 3년 이상 보존하고 있는가? • 유기취급계획은 가공 및 유통을 포함하는 전체 관리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가? • 표본추적 결과 이력추적이 가능하였는가? • 대조감사 결과 투입과 산출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 가공, 포장, 저장, 운송, 판매 기타 취급에 관한 관리지침이 문서화되어 보존되고 있는가? • 모든 기록 및 관련된 현장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가?

PART 3. 코덱스가이드라인 및 인국의 유기식품관련규정

1.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Codex 가이드라인

서문	
제1장 적용 범위	
제2장 용어의 설명 및 정의	
제3장 표시	
제4장 생산 규칙	
제5장 부속서 2의 허용물질 포함요건 및 국별 물질목록 작성기준 ...	
제6장 검사 및 인증제도	
제7장 수입	
제8장 가이드라인의 재검토	
부속서1 유기생산의 원칙	
부속서2 유기식품 생산에 허용되는 물질	
부속서3 검사/인증시의 최소 검사요건 및 예방조치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서문

1. 본 가이드라인은 유기식품의 생산, 표시에 관하여 합의된 요건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시장에서 일어나는 기만, 사기행위, 또는 제품특성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 비유기 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인양 주장하는 행위로부터 유기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한다.
 - 생산, 준비, 저장, 운송,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단계가 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 한다.

- 유기농산물의 생산, 인증, 식별, 표시에 관한 제반 규정에 조화를 유도한다.
 - 수입품과 관련하여 각국의 국내 체계가 국제 체계와 상충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기식품 통제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각국의 유기농업 체계를 지역적 및 범지구적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지, 향상시킨다.
3. 본 가이드라인은 생산규격, 판매규격, 검사방법, 표시방법 등의 측면에서 유기제품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공식적인 국제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작업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요건의 개발 및 시행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더욱이 유기농법에 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다.
- 본 가이드라인은 각국이 유기식품의 생산, 판매, 표시에 관한 제도를 수립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가이드라인은 기술의 발전과 신기술의 도입을 감안, 정기적인 개선 및 수정이 요구된다.
 - 본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부정직한 행위를 막기 위해 회원국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타국 제품에 대하여 그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타국도 자국 제품에 대해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4. 본 가이드라인은 유기식품의 생산, 준비, 저장, 운송, 표시, 판매 단계에 적용되는 제반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토질 부양제, 토질 개선제, 병해충 방제제, 식품 첨가제, 가공 보조제의 적정 투입량을 제시하고 있다. 표시(라벨)에 유기농법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인증기관의 감독하에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제한한다.
5. 유기농법은 환경보호를 지원하는 여러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유기생산 체계는 사회적, 생태학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최적의 농업생태계를 이룬다는 목표를 가진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생산기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생물학적”이나 “생태학적”이라는 용어는 유기체계를 보다 분명하게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유기식품의 요건은, 생산절차가 제품의 식별, 표시에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농산물 요건과 다르다.
6. “유기”라는 말은 유기생산 기준에 맞추어 생산하였고 공식 인증기관이 인정한 제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용어이다. 유기농업은 합성비료와 살충제의 사용을 피함으로써 외부 투입물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 환경이 전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현실이므로 유기농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잔류물이 완전히 제거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기, 토양, 수질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유기농법에서는 쓰고 있다. 유기식품 취급자, 가공자, 소매상들은 유기 농산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기준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유기농업의 일차적 목표는 토양 생물, 식물, 동물, 인간이라고 하는 상호의존적 존재들의 건강과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데 있다.
7. 유기농업은 생물의 다양화, 생물학적 순환의 원활화,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 촉진 등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 향상시키려는 총체적 생산관리 체계이다. 유기농업은 지역 형

편에 따라 현지 적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농장 외부 물자의 투입보다는 관리 방법을 강조한다. 이에 부응하려면 가능한 한 합성물질 사용과 반대되는 재배방법이나 생물학적,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체계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유기생산 체계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a) 체계(system) 전체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증진한다.
- b)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을 촉진한다.
- c) 토양의 비옥도를 오래도록 유지한다.
- d) 동식물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 영양분을 대지에 되돌려 줌으로써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 e) 현지 농업체계에서는 재생가능한 자원에 의존한다.
- f) 영농의 결과로 야기되는 모든 형태의 토양, 물,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 물, 대기의 건강한 사용을 조장한다.
- g) 제품의 유기적 특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에서 가공 방법에 신중을 기하면서 농산물을 다룬다.
- h) 어느 농장이든 전환기간만 거치면 유기농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한다. 전환기간은 농지의 이력, 작물/가축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8.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긴밀한 접촉이라는 개념은 확립된 지 오래되었다. 수요가 커지고 생산에 대한 경제적 관심이 높아지며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농산물에 대한 외부 통제 및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9. 인증의 필수 요소는 유기 관리체계에 대한 검사이다. 사업자 인증은 주로 사업자가 검사기관과 협력하여 작성하는 농업경영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가공단계에서 작업실태와 공장상태를 검사,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도 개발되었다. 검사를 인증기관이 실시할 때는 검사기능과 인증기능이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절차를 인증하는 인증기관이 인증의 신뢰도를 유지하려면 사업자의 인증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10. 농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소량의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기존의 유통경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게 된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행위를 최소화하려면 유통업체와 가공업체를 효과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종제품보다 거래과정에 대한 규제에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11. 수입 요건은 “식품수출입검사및인증에관한원칙”에 언급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각국이 유기제품의 수입을 허가할 때는 수출국에서 적용하는 검사 및 인증 절차와 기준을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12. 코덱스 식품표시분과위원회(CCFL)는 본 가이드라인 하에 유기생산 체계가 계속 발전하고 유기생산의 원칙과 기준이 계속 개발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것이다. CCFL은 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앞서 매년 회원국 정부와 국

제기구에 본 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한 제안을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재검토를 개시하게 된다.

제1장 적용 범위

- 1.1 본 가이드라인은 다음 제품 가운데 유기농법을 사용했음을 표시하거나 표시할 예정인 제품에 적용한다.
 - a) 부속서1과 3에 생산원칙과 검사규정이 나와 있는 미가공 식물·식물제품과 가축·가축제품
 - b) 위 (a)를 주원료로 하여 사람의 소비용으로 가공한 농작물 및 가축 제품
- 1.2 광고, 상용문서, 라벨 등에 제품이나 제품성분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묘사되고 있으면 그 제품은 유기농법을 사용하여 생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에서 “유기적”, “생물역학적”, “생물학적”, “생태학적” 등의 용어(약어 포함)를 사용하여 제품이나 제품성분이 유기농법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을 구입자에게 암시한다.
- 1.3 용어가 유기농법과 뚜렷한 관계가 없을 때는 위 1.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1.4 본 가이드라인은 위의 1.1항에 명시한 제품의 생산, 준비, 판매, 표시, 검사와 관련하여 코덱스 식품위원회(CAC)가 정한 다른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적용한다.
- 1.5 유전자 조작/변형 유기체(GEO/GMO)로부터 생산된 물질 또는 제품은 유기생산의 원칙과 모순되므로(재배, 생산, 가공의 모든 측면에서) 본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제2장 용어의 설명 및 정의

2.1 설명

상호의존적인 생명체의 다양한 혼합, 동식물 잔존물의 재활용, 작물의 정선 및 순환, 수질관리, 경작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성을 유지하고 잡초와 병해충을 억제하는 관리방법을 쓰는 유기농장에서 나온 식품에만 유기농법을 사용했음을 언급할 수 있다. 토양의 비옥도는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과 토양의 물리적, 광물학적 특성을 최적화하여 토양자원을 보존하고 동식물에 균형잡힌 영양공급을 해줌으로써 유지, 증진된다. 생산은 식물양분의 순환을 토양 비옥화의 필수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속이 가능해야 한다. 병해충은 숙주와 포식 생물간의 균형 유지, 익충 수 증대, 해충과 해충의 피해를 받은 식물 부위의 생물학적 통제(재배방법 포함) 및 기계적 제거 등을 통해 방제한다. 유기축산은 토양, 식물, 가축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가축의 생리·행동 욕구를 존중하는 데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고품질 사료를 제공하고 적절한 사육공간을 제공하며 가축의 행동 욕구에 적합한 사육체계를 운영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면서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화학치료제(항생제 포함)의 사용을 삼가는 관리방법을 구축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2.2 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농산물/농산물계 제품’은 인간의 섭취 또는 동물사료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비가공 제품(원료농산물 포함) 및 가공 제품을 말한다.
- ‘공인 감사’란 각종 활동과 활동 결과가 계획상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적,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인증’이란 식품이나 식품 통제체계가 요건과 일치한다는 것을 공식인증기관이나 공인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으로 한다)이 서면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수단으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 인증은 지속적인 현장 검사, 품질관리 체계 검사, 최종 제품 검사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검사에 기초를 둔다.
- ‘인증기관’은 “유기”로 팔거나 “유기”란 라벨이 붙은 제품이 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 생산, 가공, 준비, 취급, 수입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맡은 기관을 말한다.
- ‘관할기관’이란 권한을 갖는 공식 정부기관을 말한다.
- ‘유전자 조작/변형 유기체’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유전자 조작 유기체이나 그 제품은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방법—유전자의 자연적인 조합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 ‘유전자 조작/변형 기법’으로는 DNA 재조합, 세포융합, 미량/대량 주입, 캡슐화, 유전자 제거/배가 등이 있다. 접합, 형질도입, 잡종교배 등의 방법으로 만드는 유기체는 유전자 조작 유기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성분’이란 식품 첨가제를 포함하여 식품의 제조, 준비에 사용되고 최종제품에 함유되는 모든 물질(변경된 형태 포함)을 말한다.
- ‘검사’란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품, 원료, 가공, 유통의 관리체계 또는 식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기식품 검사에는 최종제품 시험 및 생산, 가공체계 조사도 포함된다.
- ‘표시’는 손으로 쓰거나 인쇄하거나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라벨에 나타나거나 식품에 첨부되거나 식품 근처에 전시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에는 판매나 처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것도 포함된다.
- ‘가축’은 식용이나 식품 제조용으로 기르는 소(물소, 아메리카 들소 포함), 양, 돼지, 산양, 말, 가금, 벌 등(길들인 야생동물 포함)을 말한다. 사냥이나 낚시로 포획한 야생동물은 가축으로 보지 않는다.

- ‘마케팅’이란 어떤 형태로든 판매를 위해 가지고 있거나 전시하거나 구입을 권하는 행위, 판매행위, 배달행위, 시장에 내다 놓는 행위를 말한다.
- ‘공인’이란 관할 정부기관이 검사기관이나 인증기관의 검사,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기생산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이 민간단체에 공인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공인 검사제도/공인 인증제도’는 관할 정부기관이 정식으로 승인하거나 인정한 제도를 말한다.
- ‘사업자’는 본 가이드라인 1.1항에 규정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준비, 수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식물보호제’란 식품, 농산물, 사료를 보호, 저장, 운송, 유통, 가공할 때 원하지 않는 동 식물, 병해충을 예방, 파괴, 유인, 퇴치,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 ‘준비’는 농산물을 도살, 가공, 보존, 포장하는 행위(유기농법 사용 표시로 바꾸는 것 포함)를 말한다.
- ‘생산’은 농장에서 나오는 형태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장에서 벌이는 활동을 말한다. 이에선 제품의 초기포장 및 표시도 포함된다.
- ‘동물 약품’은 질병을 치료, 예방, 진단하거나 생리적 기능이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유제품·고기제품 생산 동물, 가금, 어류, 벌 등 식품 생산용 동물에 투여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장 표시

- 3.1 유기제품은 코덱스의 일반 포장식품 표시규격에 준하여 표시해야 한다.
- 3.2 본 가이드라인 1.1항에 규정된 제품의 표시나 설명문(claim)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유기농법으로 생산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 (a) 표시(설명문)가 농산물 생산방법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다.
 - (b) 제품이 본 가이드라인 제4장의 요건에 따라 생산되었거나 본 가이드라인 제7장의 요건에 따라 수입되었다.
 - (c) 본 가이드라인 제6장에 규정된 검사를 받는 사업자가 제품을 생산, 수입했다.
 - (d) 제품을 생산했거나 가장 최근에 가공을 맡았던 사업자를 관할하는 공인 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이름 또는 코드번호가 표시(라벨)에 들어 있다.
- 3.3 본 가이드라인 1.1(b)항에 규정된 표시나 설명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유기농법으로 생산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 (a) 표시(설명문)가 농산물 생산방법을 나타내고 있고 해당 농산물의 이름과 관계 있음이 분명하다(이같은 표시가 성분 목록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 (b) 제품의 농산물계 성분이 모두 본 가이드라인 제4장의 요건에 따라 얻어졌거나 제7장의 요건에 따라 수입되었다.
- (c) 제품이 부속서2, 표3에 열거되지 않은 비농산물계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 (d) 같은 성분이 유기적인 것과 비유기적인 것에서 동시에 얻어지지 않는다.
- (e) 제품이나 제품성분이 준비 과정에서 이온화 방사선 조사나 부속서2, 표4에 열거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한 처리를 거치지 않았다.
- (f) 본 가이드라인 제6장에 규정된 정기검사를 받는 사업자가 제품을 준비하거나 수입했다.
- (g) 가장 최근의 준비작업을 실시한 사업자를 관할하는 인증기관의 이름 또는 코드번호가 표시에 들어 있다.

3.4 본 가이드라인 1.1(b)항에 언급된 제품을 준비할 경우, 앞 3.3(b)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정 농산물계 성분은 소금과 물을 제외한 최종제품 성분의 5%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본 가이드라인 제4장의 요건에 부합하는 농산물계 성분을 구할 수 없거나 구해도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한다.

3.5 회원국들은 제8장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재검토가 있을 때까지 본 가이드라인 1.1(b)항에 언급된 제품의 자국판매와 관련하여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 농산물계 성분이 95%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한 별도의 표시규정
- 소금과 물을 제외한 모든 성분 대신에 농산물계 성분을 기준으로 3.4항(5%), 3.5항(95%)의 비율 계산법
- 한 가지 이상 농산물계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전환중(in transition/conversion)’이라는 표시를 붙인 마케팅

3.6 회원국들은 위 조항에 따라 유기 성분 95% 미만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특히, 유기 성분 95~70%의 제품)에 관한 표시규정을 만들 때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 (a) 본 가이드라인 3.3(c), (d), (e), (f), (g)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 (b) 유기농법 사용에 관한 표시는 전체 성분(소금과 물은 제외하되 첨가제는 포함)에서 유기 성분이 차지하는 대략적인 비율을 포장 주표시면(앞면)에 나타낸다.
- (c) 성분은 양이 많은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나타낸다.
- (d) 성분목록의 표시는 모두 같은 색, 같은 형태, 같은 크기의 글자로 나타낸다.

유기로 전환중인 제품의 표시

3.7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제품은 유기농법을 사용하여 생산하기 시작한 후 12개월이 지나야 “유기로 전환중”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단, 다음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a) 본 가이드라인 3.2항과 3.3항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다.
- (b) “전환중”에 있는 제품과 전환 과정을 완전히 거친 제품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구입자

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 (c) 표시는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관할기관이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되 제품에 대한 다른 설명문보다 강조되지 않는 색상, 크기, 형태의 글자로 나타낸다.
- (d)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 식품은 주표시면에 “전환기유기”(유기농법으로 전환 도중)라고 표시할 수 있다.
- (f) 표시는 가장 최근에 준비작업을 수행한 사업자를 인증한 인증기관의 이름 또는 코드번호를 넣는다.

비소매용 용기의 표시

3.8 본 가이드라인 1.1항에 규정된 제품에 사용할 비소매용 용기의 표시는 부속서3, 10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4장 생산 및 준비 규칙

4.1 유기농법으로 본 가이드라인 1.1(a)항에 언급된 제품을 생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최소한 부속서 1의 생산요건을 충족한다.
- (b) 위 (a)항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부속서2, 표1과 2에 열거된 물질이나 5.1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가운데 개별 국가가 승인하는 물질을 식물보호제, 비료, 토양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다.

4.2 유기가공 방법으로 본 가이드라인 1.1(b)항에 언급된 제품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최소한 부속서1의 가공요건이 충족된다.
- (b) 부속서2, 표3과 4에 열거된 물질이나 본 가이드라인 5.1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은 비농산물계 성분이나 가공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물질의 사용이 식품의 준비에 관한 각국의 요건에 어긋나지 않고 또 바람직한 생산행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4.3 유기제품은 부속서1의 요건에 따라 저장, 운송해야 한다.

4.4 관할기관은 유기농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부속서1의 가축생산 규정과 관련된 4.1(a)항과 4.2(a)항의 규정을 유보하고 보다 상세한 규칙을 마련하거나 시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부속서 2의 허용물질 포함에 필요한 요건 및 국별 물질목록 작성 기준

5.1 본 가이드라인 제4장에 나오는 허용물질 목록의 수정에는 최소한 다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각국은 유기생산에 사용되는 신물질의 평가에 이 기준을 사용할 때 관련 규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신물질은 모두 다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a) 유기생산 원칙(서문 제7항 참조)에 부합한다.
- (b) 특정 용도에 해당 물질의 사용이 필요불가결하다.
- (c) 해당 물질의 사용으로 환경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d)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극히 적다.
- (e) 대체물질을 질적·양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없다.

이 기준은 유기생산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a) 토양의 비옥화나 토질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토질의 비옥도를 유지, 개선하거나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데 필수적이며 또 부속서1에 나오는 방법이나 부속서2, 표1에 나오는 다른 제품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특정 토질 개선 및 윤작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데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 성분이 동식물, 미생물, 무기물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각 성분은 물리적(기계적, 열역학적) 처리, 효소 처리, 미생물 처리를 거칠 수 있다.
 - 해당 물질의 사용으로 토양 유기물이나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b) 식물의 병충해나 잡초 방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생물학적 방법, 재배방법, 물리적 방법, 육종방법으로는 방제가 불가능한 유해 생명체나 특정 질병의 방제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 성분이 동식물, 미생물, 무기물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각 성분은 물리적(기계적, 열역학적) 처리, 효소 처리, 미생물 처리(합성, 소화)를 거칠 수 있다.
 - 자연 상태로는 충분한 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합성되어 특수한 상황에서 페로몬처럼 닳이나 디스펜서에 사용되는 물질은 목록에 올릴 수 있다. 다만, 사용했을 때 식용 부위에 직간접적으로 잔류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c) 식품의 조제나 보존시 첨가제나 가공보조제로 사용되는 경우
 - 자연에 존재해야 하나 기계적/물리적 처리(예 ; 추출, 침전), 생물/효소 처리, 미생물 처리(예 ; 발효)를 거칠 수 있다.
 - 위와 같은 방법과 기술로 충분한 양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을 허용물질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다른 기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질이 식품의 조제에 필수적이어야 한다.
 - 식품의 특성, 재료, 품질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목록에 포함시킬 물질의 평가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5.2 각국은 본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물질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물질이 한 국가가 만든 목록에는 들어 있으나 본 가이드라인 부속서2에는 들어 있지 않다면 본

가이드라인 7.4항에 나오는 적합성 심사(equivalence judgement and decision) 대상이 된다. 각국은 목록을 만들면서 부속서2에 들어 있는 물질을 줄일 수도 있다. 각국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부속서2에 열거된 물질 이외의 물질을 자국의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본 가이드라인 5.1항의 기준을 목록 첨가의 근거로 사용한다.
- 아래 5.3항과 5.4항에 의거하여 통보한다.

5.3 한 국가가 부속서2에 어느 물질의 첨가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 (a)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용 조건
- (b) 5.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

목록의 공개

5.4 부속서2의 목록은 핵심이 되는 물질목록을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개방되며, 새 물질이 추가되거나 기존 물질이 삭제될 수 있다. 목록의 수정을 요청하는 절차는 본 가이드라인 제8장에 나와 있다.

제6장 검사 및 인증제도

6.1 검사와 인증제도는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식품에 사용된 표시나 설명문(claim)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검사와 인증제도를 수립할 때는 식품수출입검사및인증에 관한원칙, 디자인 가이드라인,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 제도의 운영·평가·인정 요령 등을 고려해야 한다.

6.2 관할기관은 검사제도를 수립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임기관이나 공인 검사/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본 가이드라인 1.1항에 언급된 제품을 생산, 가공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를 운영하게 해야 한다.

6.3 공인 검사/인증 제도는 적어도 부속서3에 규정된 요건과 예방조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6.4 인증기관을 통해 검사제도를 운영하려면 정부에서 이들 기관의 승인, 감독을 맡을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 지정된 기관은 민간 검사/인증 기관에 대한 평가와 감독을 재삼의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임할 수 있다(‘위임기관’으로 부름). 다만, 모든 결정과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정된 기관이 진다. 위임기관은 검사 또는 인증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수출국이 지정된 기관이나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수입국은 제삼의 인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6.5 관할기관(위임기관)이 인증기관을 평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검사 대상 사업자에게 적용할 상세한 검사방법과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 검사/인증

절차

- (b) 부당행위나 규정위반이 있을 때 부과할 벌칙
- (c) 유자격 직원, 사무실, 설비, 검사 경험, 신뢰도
- (d) 검사 대상 사업자에 대한 인증기관의 객관성

6.6 관할기관(위임기관)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a) 검사기관이나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실시한 검사가 객관적인지 확인한다.
- (b) 검사의 효율성을 확인한다.
- (c) 발견된 부당행위나 위반행위와 이에 적용된 벌칙을 확인한다.
- (d) 인증기관이 상기 (a)항과 (b)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 6.5항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6.7항이나 6.9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철회한다.

6.7 상기 6.2항에 언급된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a) 검사시 최소한 부속서3에 규정된 검사방법과 주의사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b) 검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관할기관 이외의 사람에게 검사 또는 인증 업무에서 얻은 비밀 정보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

6.8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a) 인증기관의 감사를 위한 인증기관 사무실/시설의 출입 및 사업자의 감사를 위한 사업자 시설의 출입을 관할기관(위임기관)에 허용한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위해 관할기관(위임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 정보와 도움을 제공한다.
- (b) 매년 전년도에 검사받은 사업자 목록 및 간략한 연례보고서를 관할기관(위임기관)에 제출한다.

6.9 본 가이드라인 6.2항에 언급된 위임기관이나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a) 본 가이드라인 제3장과 제4장 및 부속서3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본 가이드라인 1.2항에 규정된 유기생산 표시를 위반한 행위가 발견된 로트 전체 또는 생산구역에서 제거한다.
- (b) 명백한 위반행위나 장기적 영향이 있는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기관(위임기관)과 합의한 기간 동안 유기농법을 사용했음을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

6.10 관할기관이 본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행위나 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입식품 불합격처리에관한국가간정보교환가이드라인의 요건도 적용한다.

제7장 수입

7.1 본 가이드라인 1.1항에 명시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조항과 부속서의 규정을 준수한 생산, 준비, 판매, 검사 체계 안에서 얻어진 것이며, 7.4항에 언급된 동등성(equivalency)에 관한 결정을 만족시킨다는 내용이 수출국의

관할기관(위임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7.2 위 7.1항에 언급된 인증서의 원본은 제품에 첨부하여 1차 인수자의 국내까지 보내야 한다. 수입자는 검사나 감사에 대비하여 이후 최소한 2년 동안 거래 인증서를 보관해야 한다.

7.3 제품은 수입 후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원래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수입 유기 제품이 검역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원래의 유기 상태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

7.4 수입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

- (a) 수출국의 규정이 수입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수출국에서 적용되는 규정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요구한다. 단, 수입국의 규정이 본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한다. 양국의 관할기관 사이에 합의된 독립 전문가들이 만든 보고서도 판단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 (b) 수출국 인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과 준비에 관한 규정 및 생산과 준비에 적용하는 검사/인증 방법을 조사한다.
- (c) 본 가이드라인 제3장의 표시 요건에 따라 수입국에서 제품에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막는다.

제8장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재검토

8.1 각국 정부에 자문을 제공한다는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따라 식품표시분과위원회(CCFL)는 언제라도 회원국 정부와 국제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합의되면 CCFL는 이 분야의 발전상황을 감안하여 4년마다 한번씩 본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2년마다 한번씩(또는 필요한 대로) 부속서2의 목록을 재검토한다.

8.2 제안서는 모두 'Secretary,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 FAO, 00100, Rome ITALY'로 보내야 한다.

부속서 1

유기생산의 원칙

A. 식물과 식물제품

1. 본 부속서에 규정된 원칙은, 농장(구획농장, 단위농장 포함)의 경우에는 파종에 앞서 최소한 2년의 전환기간, 본 가이드라인 1.1(a)항에 언급된 목초나 영년작물의 경우에는 첫 번째 수확까지 최소한 3년의 전환기간이 있어야 한다. 관할기관이나 인증기관은 농장사용 경력을 감안하여(예를 들어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전환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전환기간은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전환기간은 길이에 관계없이 본 가이드라인 6.2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 농장이 검사 대상이 된 후 그리고 본 가이드라인 제4장의 생산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한 후에 개시할 수 있다.
3. 전체 농장이 한꺼번에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기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농장이 한꺼번에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속서3, A부, 3~1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작은 단위로 분할해야 한다.
4. 유기농법으로 전환된 구역과 전환중인 구역에서는 유기농법과 관행농법을 번갈아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5. 토양의 비옥도와 생물 활동은 다음과 같이 유지, 증진시킨다.
 - (a) 두과작물, 녹비, 심근성 작물을 다년간 윤작한다.
 - (b) 퇴비화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된 유기물질을 토양에 투입한다. 구비 등 축산업에서 나온 부산물 가운데 본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생산하는 축산농가에서 나온 부산물도 사용할 수 있다.
부속서 2, 표 1에 규정된 물질은 작물의 영양공급이나 토질 개선이 6.5(a), (b)항에 정해진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하고, 구비는 유기농장에서 구할 수 없을 경우에만 사용한다.
 - (c) 미생물이나 식물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여 퇴비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 (d) 돌가루(stone meal), 구비, 식물성분으로 만든 생물 활성제(biodynamic preparations)를 6.5항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6. 병해충이나 잡초는 다음 방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억제한다.
 - 알맞는 작목과 품종을 선택
 - 적절한 윤작
 - 기계적인 경운
 - 울타리, 보금자리 등을 제공하여 해충 천적을 보호

- 생태계를 다양화.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침식을 막는 완충지대, 농경 삼림, 윤작작물 등을 사용
 - 화염을 사용한 제초
 - 포식생물이나 기생동물의 방사
 - 돌가루, 구비, 식물성분으로 만든 생물 활성제 사용
 - 멀칭이나 예취
 - 동물의 방사
 - 밭, 울타리, 빛, 소리 등 기계적인 수단을 사용
 - 수증기 살균(토질의 갱신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7. 작물에 위협이 임박하거나 심각하며, 위 6항의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부속서2에 나오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8. 종자나 종묘는 적어도 1세대(영년작물의 경우에는 2번의 생육기간)를 본 가이드라인 4.1항의 규정에 따라 재배한 작물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위 요건을 만족시키는 물질을 구할 수 없음을 검사기관에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검사기관은 다음을 허용할 수 있다.
- (a) 처리되지 않은 종자나 종묘를 사용
 - (b) 위 (a)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속서 2의 물질과 다른 물질로 처리된 종자나 종묘를 사용
- 관할기관은 위 8항에 따른 이차적인 방법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9. 삼림이나 농업지역 등에서 채집한 자생 식용식물이나 그 일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유기 생산물로 간주할 수 있다.
- 본 가이드라인 제6장에 규정된 검사/인증의 대상으로 뚜렷이 구분된 지역에서 채집되었다.
 - 채집지역이 채집 전 3년 동안 부속서2의 물질과 다른 물질로 처리되지 않았다.
 - 채집 지역 내 자생환경의 안정이 침해받지 않고 종의 유지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채집되었다.
 - 같은 제품의 수확, 채집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수집했고, 이 사업자는 신원이 확실하며 채집 지역을 두루 잘 안다.

B. 가축 및 가축 제품

일반 원칙

1. 유기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은 유기농장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 관리해야 한다.
2. 가축은 다음을 통해 유기농장의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a) 토양 비옥도를 유지, 개선
 - (b) 초지의 식물군을 관리(방목시)
 - (c) 농장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높이고 보완적인 상호작용을 촉진
 - (d) 농장 시스템의 다양성을 증진
3. 가축 생산은 대지와 관련된 활동이다. 초식 가축은 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가축은 야외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관할기관은 전통적인 영농 시스템이 초지 접근을 제약할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단, 가축의 생리 상태, 기상 조건, 대지 상태에 문제가 없고 가축의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4. 가축 밀도는 지역의 사료생산 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 균형,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한다.
5. 유기축산은 자연 번식 방법을 사용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질병을 억제하고 화학약품(항생제 포함)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배제하며 동물성 사료(예 : 육분)의 공급을 줄이고 가축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가축의 공급처/산지

6. 품종, 계통, 번식방법은 다음을 고려하여 유기축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 a) 지역 조건 적합성
 - b) 활력 및 내병성
 - c) 일부 품종/계통에서 발견되는 특정 질병이나 건강 문제(PSE, 습관성 유산 등) 유무
7. 본 가이드라인의 1.1(a)항을 만족시키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생후 또는 부화 직후에 반입된 것이거나 본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조건에 맞게 키워진 가축의 자손이어야 한다. 반입된 가축은 일생 동안 유기생산 방법으로 사육해야 한다.
- 가축은 유기 농장과 비유기 농장 간에 이동시킬 수 없다. 관할기관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구입하는 데 적용할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가축 생산 농장에 있지만 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가축은 전환시킬 수 있다.
8. 농장 운영자가 전항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가축을 확보할 수 없음을 관할기관이나 공인 검사/인증 기관에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관할기관이나 공인 검사/인증 기관은 다음 조건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되지 않은 가축을 들여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a) 품종이 바뀌었거나 전문화되어 농장을 크게 확장하는 때
 - (b) 큰 재해로 폐사율이 높아져 축군을 갱신하는 때
 - (c) 번식용 수컷을 입식하는 때
- 관할기관은 가능한 한 이유 직후의 어린 가축을 입식하는 조건으로 비유기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9. 전항의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입식이 허용된 가축은 12항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들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본 가이드라인 제3장에 따라 유기식품으로 판매되려면 12항의 전환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전환

10. 사료작물이나 목초의 생산을 위한 대지 전환은 본 부속서 A부의 1, 2, 3항에 나오는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
11. 관할기관은 다음의 경우 10항(대지)이나 12항(가축 및 가축제품)에 정해진 전환기간이나 전환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
- (a) 비반추 가축에 사용되는 초지, 노천지, 운동 공간
 - (b) 관할기관이 정한 시행 기간 동안 조방적으로 사육된 소, 말, 면양, 산양이나 처음 전환된 젖소
 - (c) 같은 농장에서 가축과 사료용 농지가 동시에 전환된다면 가축과 사료용 농지의 전환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다. 단, 기존 가축과 그 자손에 같은 농장에서 생산된 사료가 주로 공급되어야 한다.
12. 유기 지위에 도달한 농지에 비유기 가축이 입식되었을 경우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유기식품으로 팔 수 있으려면 이들 가축을 최소한 다음의 순치기간 동안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사육해야 한다.

소와 말

고기제품 : 유기 관리 조건하에서 12개월(단, 최소한 수명의 3/4).

고기제품 생산용 송아지 : 이유 후 즉시 입식한 송아지(생후6개월 미만)로서 6개월

유제품 : 관할기관이 정한 시행 기간 동안에는 90일, 그 후에는 6개월

면양·산양

고기제품 : 6개월

유제품 : 관할기관 기관이 정한 시행 기간 동안에는 90일, 그 후에는 6개월

돼지

고기제품 : 6개월

가금/산란계

고기제품 : 관할기관이 정한 수명 전체

알(달걀 등) : 6주

영양

13. 가축 농장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생산된 사료(‘전환기’ 사료 포함)를 100% 공급해 주어야 한다.
14. 관할기관이 정한 시행 기간 동안에 축산물이 유기 상태를 유지하려면 반추 동물 사료는 85%(건물 기준) 이상, 비반추 동물 사료는 80% 이상이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된 유기사료이어야 한다.
15. 농장 운영자가 관할기관이나 공인 검사/인증 기관에 위 1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료를 확보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예 : 예측 불능의 심각한 천재, 인재, 일기변화 등) 관할기관이나 공인 검사/인증 기관은 한정된 기간 동안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되지 않은 사료를 일정 비율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사료에 유전자 조작/변형 유기체나 그 제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관할기관은 비유기 사료의 최대 허용비율과 사용조건을 정해야 한다.
16. 가축에 사료를 공급할 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어린 포유동물은 천연유(모유가 좋음)를 필요로 한다.
 - 초식 가축이 매일 먹는 사료(건물 기준)에는 조사료, 생초, 건초, 사일리지(저장 목초)가 상당량 함유되어야 한다.
 - 위가 2개 이상인 가축은 사일리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
 - 육용 가금은 비육 단계에 곡류를 먹일 필요가 있다.
 - 돼지와 가금이 매일 먹는 사료에는 조사료, 생초, 건초, 사일리지가 상당량 함유되어야 한다.
17. 모든 가축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선한 물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18. 특정 물질이 사료, 영양제, 첨가제, 가공보조제로 사용된다면 관할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한 물질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 기준

- (a) 가축 사육에 관한 법에 허용된다.
- (b) 가축의 건강, 복지, 활력에 필요 불가결하다.
- (c) 다음 특성을 갖는다.
 - 해당 가축의 생리·행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 유전자 조작/변형 유기체나 그 제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 주로 식물성, 광물성, 동물성 성분으로 되어 있다.

사료·영양제 기준

- (a) 비유기적으로 생산된 식물성 사료는 14, 15항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단, 화학 처리(솔벤트 사용 포함)가 되지 않아야 한다.
- (b) 미네랄, 추적제, 비타민, 프로비타민은 천연적인 것만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물질이 부족할 때나 상황이 특수할 때는 화학적으로 잘 정의된 유사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 (c) 우유, 유제품, 해양 동물(어류 포함), 해양동물 제품을 제외한 동물성 사료는 될수록 사용하지 않는다(각국 법에 따름). 반추 가축에 우유나 유제품 이외의 포유동물계 사료를 먹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d) 합성질소나 비단백질소(NPN) 화합물은 사용할 수 없다.

첨가제·가공 보조제 기준

- (a) 결착제, 향고형제, 유화제, 안정제, 표면활성제, 응고제 : 천연적인 것만 허용된다.
 - (b) 항산화제 : 천연적인 것만 허용된다.
 - (c) 방부제 : 천연적인 것만 허용된다.
 - (d) 착색제(색소 포함), 향미제, 식욕촉진제 : 천연적인 것만 허용된다.
 - (e) 생균제, 효소제, 미생물제는 허용된다.
 - (f) 항생제, 항콕시듐제, 의약품질, 성장·생산 촉진제는 사용할 수 없다.
19. 유전자 조작/변형 유기체나 그 제품은 사일리지 첨가제와 가공 보조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사일리지 첨가제와 가공 보조제는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바다 소금
 - 굵은 암염
 - 효모제
 - 유장(乳漿)
 - 당 또는 당제품(당밀 등)
 - 꿀
 - 젖산균, 초산균, 개미산균, 프로피온산균이나 이들에서 추출한 천연산은 기후 조건상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할기관이 승인할 때만 첨가할 수 있다.

건강 관리

20. 유기가축의 질병 방지는 다음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a) 위 6항에 따라 품종과 계통을 적절히 선택한다.
 - (b) 각 축종에 적합한 사육 방법(질병 및 감염 방지)을 사용한다.
 - (c) 자연적인 면역 기능이 강화되도록 양질의 유기사료를 공급하고 초지와 노천지에 정

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d) 적정 가축밀도를 유지하여 과밀 사육에 의한 건강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

21.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축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면 즉시 치료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적정 사육장에 격리시켜 치료할 수도 있다. 가축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을 경우에는 유기 지위를 잃게 된다 하더라도 약물투여를 유보하지 않아야 한다.

22. 유기 농장에서 동물 약품을 사용할 때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특정 질병이나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다른 치료방법이나 처치방법이 없거나 법으로 요구될 때는 예방접종이나 구충제·치료제의 사용이 허용된다.

(b) 약초요법(항생제 제외) 제제, 동종요법 제제, 추적제가 해당 축종이나 질병에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화학 동물약품이나 항생제에 우선하여 사용해야 한다.

(c) 상기 제품이 질병에 효과적이지 않을 때는 수의사의 책임 하에 화학 동물약품이나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휴약기간은 법정기간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최소 48시간).

(d)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화학 동물약품이나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23. 호르몬 처치는 수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24. 성장이나 생산을 촉진할 목적으로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육, 운송, 도살

25. 가축은 따뜻한 배려, 책임감, 애정을 가지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26. 번식방법은 유기축산 원칙을 따르되 다음을 고려하여 정한다.

(a) 현지 조건과 유기 체계 하에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과 계통을 고른다.

(b)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가 권장되지만 인공수정도 할 수 있다.

(c) 수정란 이식기법이나 번식 호르몬 처리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d) 유전공학을 사용한 번식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27. 유기축산 체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면양의 꼬리에 점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뿔 자르기 같은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 가축의 안전, 건강, 복지 개선에 필요할 경우 관할기관이나 그 대리기관은 이들 가운데 일부 행위(유축 뿔 자르기 등)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적절한 연령에서 실시하되 가축에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마취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제품의 품질 향상과 전통적인 생산 방법(비육돈, 거세 수소, 거세 토끼)의 유지를 위해 물리적 거세가 허용되지만 본 항의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28. 사육 조건/환경은 가축의 행동양식을 고려하여 관리하되 다음이 충분히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 다른 가축(특히 유사 품종)과의 어울림

- 비정상적인 행동, 부상, 질병 예방 조치
 - 화재, 필수장비 손상, 필수품 부족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29. 생축의 수송은 부상, 스트레스, 고통 없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할기관은 수송 조건과 수송 시간 한도를 정해야 한다. 가축을 수송할 때에는 전기적 자극이나 안정제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30. 가축의 도살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축사 및 방목 조건

31. 가축이 야외에서 살 수 있는 기후조건을 가진 지역에서는 축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32. 축사는 다음을 갖추어 가축의 생물학적 욕구와 행동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사료와 음용수 접근의 용이성
 - 공기, 먼지, 온습도, 가스가 가축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단열, 냉난방, 환기 시설
 - 신선한 공기와 자연광의 충분한 공급
33. 가축은 기후조건이 나쁘거나 건강, 안전, 복지가 위협을 받을 수 있거나 식물, 토양, 수질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두어 사육할 수 있다.
34. 축사의 가축 밀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축의 품종, 계통, 연령에 걸맞는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 욕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 일어서기, 눕기, 회전하기, 몸 손질하기, 기지개 켜기, 날갯짓 등 모든 자연스런 동작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5. 축사, 우리, 장비, 용기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하여 교차 감염이나 질병운반체의 증식을 억제한다.
36. 방목지, 노천지, 운동 공간은 지역 기후조건과 품종 특성에 맞추어 비바람, 햇빛, 극한 온도로부터 보호한다.
37. 야외(자연·반자연 서식지 등)에서 기르는 가축의 밀도는 토질 악화와 목초의 과도한 섭취를 피할 수 있을 만큼 낮아야 한다.

포유 동물

38. 포유 동물을 사육할 때는 초지, 노천지, 운동 공간의 일부에 지붕을 설치하여 생리적 조건, 기후조건, 지면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9. 관할기관은 다음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 수소의 초지 접근 또는 암소의 겨울철 노천지·운동 공간 접근

- 비육 말기

40. 축사의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도록 하되 전체를 판자로 하거나 격자구조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41. 축사는 견고하고 편안하고 청결하고 건조하고 충분히 큰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휴식공간에는 건조한 깔짚을 많이 깔아야 한다.
42. 관할기관의 승인 없이 송아지를 한 마리씩 박스형 우리에 넣거나 가축에 밧줄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3. 번식돈은 임신말기나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사되어야 한다. 자돈은 평평한 바닥이나 자돈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없다. 운동 공간에서는 배변이나 땅파기가 가능해야 한다
44. 토끼를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금

45.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해야 하고 기후조건에 따라 노천지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가금을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6.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시냇물, 연못, 호수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47. 가금류 축사에는 짚, 톱밥, 모래, 잔디와 같은 깔짚이 깔린 견고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산란계에는 배설물의 수집에 충분한 바닥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횡대/공중 수면공간의 크기와 수는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해야 하며 적당한 크기의 출입 구멍이 있어야 한다.
48. 산란계를 위해 자연적인 낮시간을 인공광으로 연장할 경우 관할기관은 축종, 지리적 조건, 전반적인 건강을 고려하여 인공광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
49. 가금의 건강을 위해 한 차례의 사육이 끝나면 축사를 비워 식물이 다시 자랄 때까지 둔다.

분뇨 관리

50. 축사나 방목지의 분뇨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토양과 수질의 악화를 최소화한다.
 - (b) 질산과 병원성균으로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
 - (c) 영양소의 재순환을 최적화한다.
 - (d) 유기축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태우기 등)를 하지 않는다.
51. 퇴비 시설을 포함한 모든 분뇨 저장/취급 시설은 토양이나 지표수의 오염이 방지되도록 설계, 건축, 관리해야 한다.
52. 분뇨 살포는 토양이나 지표수가 오염되지 않는 수준으로 한다. 관할기관은 분뇨 살포

한도나 사육밀도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분뇨를 살포하려면 연못, 강, 시냇물로 유출될 위험이 커지지 않는 시기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자료 보관 및 식별

53. 농장 운영자는 부속서3의 7 ~ 15항의 규정에 따라 상세하고 업데이트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종별 요건

양봉 및 꿀벌 제품

일반 원칙

54. 양봉은 벌의 수분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와 농림업 생산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55. 벌통의 처리와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56. 꿀벌의 활동 지역은 적정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하고 물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
57. 자연 과즙(넥타), 단물, 꽃가루는 기본적으로 유기적으로 자란 식물과 야생 식물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58. 벌의 건강은 적정 품종 선택, 좋은 환경, 균형 있는 먹이, 적절한 양봉 방식을 통한 질병 예방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
59. 벌통은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벌의 생산물을 오염시킬 위험이 없는 자연 소재로 이루어져야 한다.
60. 벌을 야생 환경에 풀어놓을 때는 토착 곤충의 밀도에 유의해야 한다.

벌통의 위치

61. 벌통은 작물이나 야생식물의 생육이 본 가이드라인 제4항에 나오는 생산 원칙에 부합하는 곳에 위치시켜야 한다.
62. 공식 인증기관이나 관할기관은 양봉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답사를 통해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양봉 예정지에서 단물, 넥타, 꽃가루가 적절히 공급되는지 여부를 승인해야 한다.
63. 공식 인증기관이나 관할기관은 벌이 본 가이드라인의 요건에 부합하는 영양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반경(벌통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4. 공식 인증기관이나 관할기관은 금지된 물질, 유전자 변형 유기체, 환경오염 물질에 의

한 오염 가능성이 있어 본 요건에 부합하는 벌통을 위치시킬 수 없는 지역을 구분해 놓아야 한다.

먹이

65. 꿀 생산 기간이 종료되면 군체가 동면기간 동안 생존하기에 충분한 양의 꿀과 꽃가루를 벌통에 남겨두어야 한다.
66. 특수한 여건(악성 기후 등) 때문에 일시적인 먹이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군체에 먹이를 공급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유기적으로 생산된 꿀이나 설탕을 사용해야 한다. 공식 인증기관이나 관할기관은 비유기적으로 생산된 꿀이나 설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정해야 한다. 먹이는 꿀을 마지막으로 채취한 시점부터 다음의 넥타/단물이 나오는 시점까지만 주어야 한다.

전환기

67. 양봉에 최소한 1년 동안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경우에는 양봉 생산물을 유기 생산물로 판매할 수 있다. 전환기간에는 밀랍을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으로 교체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전체 밀랍을 교체할 수 없을 때는 인증기관이나 관할당국에서 전환기를 연장해 줄 수 있다.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이 없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이나 관할기관에서 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출처에서 나온 밀랍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단, 밀랍은 금지된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 곳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68. 벌통에 금지된 제품이 사용된 적이 없을 때는 밀랍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

벌의 선택

69. 벌 군체는 유기 군체로 전환시킬 수 있다. 새 벌은 가능하면 유기 양봉장에서 나온 것을 도입해야 한다.
70. 종벌을 선택할 때는 현지 적응능력, 활력, 내병성을 고려해야 한다.

벌의 건강

71. 벌 군체의 건강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을 통해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종벌의 선별과 벌통의 관리를 통해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a) 현지 조건에 잘 적응하는 건강한 종벌을 사용한다.
 - (b) 상황에 따라 여왕벌을 교체한다.
 - (c) 장비를 정기적으로 클리닝하고 소독한다.

- (d) 꿀 밀랍을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 (e) 벌통에 꽃가루와 꿀을 충분히 유지한다.
- (f) 체계적인 벌통 검사를 통해 이상을 탐지한다.
- (g) 벌통의 수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h) 상황에 따라 병에 걸린 벌통을 격리시킨다.
- (i) 오염된 벌통이나 재료는 폐기한다.

72. 병충해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이 허용된다.

- 유산, 수산, 초산
- 포름산
- 유황
- 자연 에테르 유(멘톨, 유카리 유, 장뇌 등)
- 비티제(*Bacillus thuringiensis*)
- 증기와 직사 화염

73. 예방 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는 다음 조건으로 동물 약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 (a) 약초 요법과 동종 요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b)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품을 사용했을 때는 벌 생산물을 유기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처리된 벌통은 격리 상태로 1년의 전환기를 거쳐야 한다. 밀랍은 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 (c) 수의학 처치는 모두 분명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74. 수벌의 제거는 *Varroa jacobsoni*의 감염을 억제할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관리

75. 기초 벌집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으로 만들어야 한다.

76. 벌 생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벌집 안의 벌을 죽이는 일은 금지된다.

77. 몸체 절단행위(여왕벌의 날개를 자르는 등)는 금지된다.

78. 꿀을 채취할 때는 합성 방충제의 사용이 금지된다.

79. 연기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발연 물질은 자연산이거나 본 가이드라인의 요건에 부합되는 재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80. 양봉 생산물을 채취하고 가공할 때는 가능한 한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기록 유지

81. 양봉업자는 부속서3,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상세하고 업데이트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벌통의 위치가 그려진 지도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C. 제품의 취급, 저장, 운송, 가공, 포장

82. 유기제품은 가공단계에서도 원래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제작업 및 첨가제, 가공 보조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성분의 특성에 맞는 가공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는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 등으로 유기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

해충 관리

83. 해충을 관리, 통제하려면 다음 방법을 순서대로 사용한다.
- (a) 해충의 서식처를 파괴, 제거하고 해충이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봉쇄하는 등의 예방적 방법이 해충관리의 일차적인 수단이 된다.
 - (b) 예방적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 (c)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부속서2, 표2에 나오는 살충제(또는 5.2항에 의거 관할기관이 허용하는 다른 물질)를 사용한다. 단, 취급, 저장, 운송, 가공 시설에서 이들을 사용하는 것을 관할기관이 허용하고 이들이 유기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84. 해충의 발생은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사용하여 막아야 한다. 저장소나 운송용기의 경우에는 격벽을 사용하거나 소리, 초음파, 빛, 덩(페르몬 또는 미끼를 사용하는 것), 온도, 기체(탄산가스, 산소, 질소 등), 규조토 등을 사용하여 해충을 막는다.
85. 수확 후의 처리나 검역을 위해 부속서 2에 열거되지 않은 살충제를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된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제품의 유기적 특성을 파괴할 수 있다.

가공과 생산

86. 가공에는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발효, 훈증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부속서 2, 표 3과 4에 나오는 비농산 물질이나 첨가제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포장

87. 포장재는 생물분해성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거나, 재활용 재질로 만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과 운송

88. 제품을 저장, 운송, 취급할 때는 다음 사항을 지켜 원래의 상태를 유지시킨다.
- (a) 유기제품과 비유기 제품이 섞이지 않게 한다.
 - (b) 유기제품이 유기농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과 접촉되지 않게 한다.
89. 제품 가운데 일부만 인증되는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지 않은 제품을 별도로 저장, 취급하고 두 가지가 뚜렷이 구별되게 한다.
90. 유기제품을 벌크(bulk)로 저장할 때는 관행 제품과 별도로 저장하고 표시도 분명히 한다.
91. 유기제품 저장소와 운송용기는 유기생산에서 허용되는 방법과 재료로 소제한다. 유기 제품 전용이 아닌 저장소나 용기의 경우에는 사용에 앞서 부속서2에 열거되지 않은 살충제나 처리제의 오염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

부속서 2

유기식품 생산에 허용되는 물질

주의사항

1. 토양의 비옥화, 토질개선, 병해충 방제, 가축의 건강, 축산물의 질, 식품의 준비·보존·저장을 위하여 유기농 체계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모두 각국의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2. 다음에 열거된 물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이 사용조건(사용 빈도, 목적 등)을 정할 수도 있다.
3. 일차 생산에 특정 물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된 물질이라도 오용될 수 있고 또 토양이나 농장의 생태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도록 한다.
4. 다음 목록은 필요한 물질을 모두 담고 있거나 불필요한 물질을 모두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목적에 전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 목록은 다만 국제적으로 합의된 물질을 각국 정부에 알려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 각국 정부는 본 가이드라인 제5장에 나오는 검토기준을 특정 물질의 허용여부 결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표 1 : 토양의 비옥화 및 토질개선에 사용하는 물질

물 질	성분요건 및 사용조건
농장 및 가금 퇴비	유기농장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공장형 농법에서 나온 것은 사용불가
이장(slurry) 및 오줌	유기생산 체계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적절한 발효, 희석을 거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공장형 농법에서 나온 것은 사용불가 ※공장형 농법이란 유기농업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료, 수의약품(獸醫藥品)에 주로 의존하는 공업적 관리 체계를 말한다.
가축 배설물(가금 배설물 포함) 퇴비 (농장 퇴비 포함)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공장형 농법에서 나온 것을 사용불가
건조된 농장퇴비 및 탈수된 가금 퇴비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공장형 농법에서 나온 것은 사용불가
구아노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짚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버섯 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기질의 초기성분은 본 목록에 나오는 제품으로 한정됨
유기농장 가정 쓰레기에서 나온 퇴비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식물 잔류물에서 나온 퇴비	
도축장과 어류산업에서 나온 가공제품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식품산업 및 섬유산업 부산물	합성 첨가제로 처리되지 않음.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해초 및 해초제품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톱밥, 나무껍질, 목재 쓰레기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나무 재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천연 인광석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카드뮴이 90mg/kg P ₂ O ₅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염기성 슬래그(鑛滓)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칼리암, 칼륨염암(mined potassium salts) (카이나이트, 실비나이트 등)	염소 60% 미만
황산칼륨(패튼칼리 등)	물리적 방법으로 만든 것으로 용해도를 높이기 위해 화학처리로 농축하지 않은 것.
자연산 탄산칼슘(백악, 이회토, 석회석, 인산 석회암 등)	—
마그네슘암	—
마그네슘 석회암	—
사리염(황산마그네슘)	—
석고(황산칼슘)	—
스틸리지(stillage) 및 그 추출액	암모니아 스틸리지 제외
염화나트륨	암염(岩鹽)에 한함
알루미늄 인산칼슘	최대 90mg/kg P ₂ O ₅
미량 원소(브롬,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황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돌가루(stone meal)	—
점토(벤토나이트,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등)	—
자연생 유기체(지렁이 등)	—
질석(vermiculite)	—
토탄(peat)	합성 첨가제 제외(종자나 분에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 다른 용도는 인증기관의 인증 필요
지렁이, 곤충에서 나온 부식토	—
제올라이트(zeolite)	—
나무 숯	—
석회소다의 염화물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인간 배설물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가능한 한 발효시켜서 사용. 인간이 소비하는 작물에는 사용불가
제당산업의 부산물(비나스 등)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야자유, 코코넛, 코코아의 부산물(빈 열매송이, 야자유 잔류물, 코코아 잔류물, 빈 코코아 꼬투리 포함)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유기 농산물계 성분(재료)을 가공하는 산업 부산물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표 2 : 식물 병해충 방제용 물질

물 질	성분요건 및 사용조건에 대한 설명
I. 동식물	
제충국(<i>Chrysanthemum cineraraefolium</i>)에서 추출한 피레스린을 기본으로 한 제제(활성제 포함 가능)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데리스 등(<i>Derris elliptica</i> , <i>Lonchocarpus</i> , <i>Thephrosia</i> spp)에서 추출한 로테논을 기본으로 한 제제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구아시아(<i>Quassia amara</i>) 제제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라이아니아(<i>Ryania speciosa</i>) 제제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인도 전단(단향목 <i>Azadirachta indica</i>)에서 추출한 님(Neem/ <i>Azadirachtin</i>)을 기본으로 한 제제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밀랍(propolis)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동식물 기름	—
해초, 해초가루, 해초추출액, 해염, 해수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
젤라틴	—
인지질(레시틴)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카세인(건락소)	—
천연산(식초 등)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아스페르길라스(<i>Aspergillus</i>) 발효제품	—
버섯(shiitake fungus) 추출액	—
클로렐라 추출액	—
담배를 제외한 자연식물 조제품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담배차(순수 니코틴은 제외)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II. 광물	
무기 화합물(보르도 혼합액, 수산화동, 산화동)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부르고뉴액(Burgandy mixture)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구리염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황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광물 분말(돌가루, 규산염)	—
규조토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규산염, 점토(벤토나이트)	—
규산 나트륨	—
중탄산염 나트륨	—
과망간산염 칼륨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파라핀유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III. 생물학적 해충방제에 사용되는 미생물	
미생물(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i>Bacillus thuringiensis</i> , <i>Granulosis virus</i> 등)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IV. 기타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칼륨 비누(potassium soap : 연성비누)	—
에틸알코올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동종요법(同種療法) 제제	—
약초 및 생물역학적 제제	—
웅성 불임곤충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V. 덫(Trap)	
페로몬(유인물질) 제제	—
고등동물 추방제 메타알데하이드(metaldehyde)를 기초로 한 제제. 덫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	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표 3 : 본 가이드라인 제3장에 언급된 비농산물계 물질

3.1 식품 첨가제(보조제 포함)

번호	명 칭	조 건
식물제품용		
170	탄산칼슘	—
220	이산화황	과실주 제조
270	젖산	발효 채소제품
290	이산화탄소	—
296	사과산(Malic acid)	—
300	아스코르빈산(Ascorbic acid)	자연산을 구할 수 없을 때
306	토코페롤(천연 농축액 혼합물)	—
322	레시틴(Lecithin)	표백제나 유기솔벤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
330	시트르산(Citric acid)	과일, 채소 제품
335	주석나트륨(Sodium tartrate)	과자, 제과용
336	주석칼륨(Potassium tartrate)	곡물식(穀物食), 케이크, 제과용
341i	인산제일칼슘	반죽을 부풀리는 데만 사용
400	아르긴산(Alginic acid)	—
401	아르긴나트륨	—
402	아르긴칼륨	—
406	한천(Agar)	—
407	카라기난(Carageenan)	—
410	로커스트빈 수지(Locust beangum)	—
412	구아 수지(Guar gum)	—
413	트라가칸트 수지(Tragacanth gum)	—
414	아라비아 수지(Arabic gum)	우유, 지방제품 및 제과용
415	크산탄 수지(Xanthan gum)	고지방 제품, 과일, 채소, 과자, 케이크, 비스킷, 샐러드
416	카라야 수지(Karaya gum)	—
440	펙틴(변형되지 않은 것)	—
500	탄산나트륨	곡물, 케이크, 비스킷
501	탄산칼륨	제과용(과자, 비스킷 등)
503	탄산암모늄	—
504	탄산마그네슘	—
508	염화칼륨	냉동 과일·채소/과일·채소 통조림, 채소 양념/케첩 및 겨자
509	염화칼슘	유제품/지방제품/과일·채소/두류제품
511	염화마그네슘	두류제품
516	황산칼슘	케이크, 비스킷/두류제품/제과용 이스트 제품
524	수산화나트륨	곡물식
938	아르곤	—
941	질소	—
948	산소	—

3.2 향료(Flavorings)

‘천연 향료 일반 요건(CAC/GL 29-1987)’에 정의된 천연 방향제 또는 천연 풍미제로 표시된 물질 및 제품.

3.3 물과 소금

음료수

소금(식품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인 염화나트륨 또는 염화칼륨)

3.4 미생물 및 효소 제제

식품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생물, 효소 제제(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미생물이나 효소는 제외)

3.5 무기질(미량원소 포함), 비타민, 필수지방, 아미노산, 기타 질소화합물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허용

가축과 벌의 생산물

다음은 가축/벌 생산물의 가공을 위해 임시로 만든 목록이다. 나라별로 5.2항의 권고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물질의 목록을 만들 수 있다.

번호	명 칭	조 건
153	나무재	재래식 치즈
170	탄산칼슘	유제품(착색제로는 불가)
270	젖산	소시지 커버
290	이산화탄소	—
322	레시틴(Lecithin)	표백제나 유기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 유제품/우유로 만든 유아식/지방제품/마요네즈
331	구연산나트륨	소시지/계란 흰자위의 저온살균/유제품
406	한천(Agar)	—
407	카라기난(Carageenan)	유제품
410	로커스트빈 수지(Locust bean gum)	유제품/육제품
412	구아 수지(Guar gum)	유제품/통조림육/계란제품
413	트라가칸트 수지(Tragacanth gum)	—
414	아라비아 수지(Arabic gum)	유제품/지방제품/제과용
440	펙틴(변형되지 않은 것)	유제품
509	염화칼슘	유제품/육류제품
938	아르곤	—
941	질소	—
948	산소	—

표 4 : 본 가이드라인 제3항에 언급된 농산물계 제품의 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공보조제

명 칭	조 건
식물제품용	
물	—
염화칼슘	응고제
탄산칼슘	—
수산화칼슘	—
황산칼슘	응고제
염화마그네슘	응고제
탄산칼륨	건포도 건조
이산화탄소	—
질소	—
에타놀	솔벤트
타닌산	여과보조제
달걀 흰자질	—
카세인(Casein)	—
젤라틴(아교)	—
운모(Isinglass)	—
식물유	유연제
산화규소	젤이나 콜로이드 용액으로
활성탄	—
활석(talc)	—
벤토나이트	—
고령토(Kaolin)	—
규조토(Diatomaceous earth)	—
펄라이트(Perlite)	—
개암껍질(Hazelnut shell)	—
밀랍	유연제
카르노바(Carnauba) 밀랍	유연제
황산	설탕 생산시 추출용수의 pH 조정
수산화나트륨	설탕 생산시 pH 조정
주석산과 소금	—
탄산나트륨	설탕 생산
나무껍질 혼합제제	—
수산화칼륨	설탕 가공에 pH 조정
시트르산(Citric acid)	pH 조정

미생물 및 효소 제제

식품가공시 보조제로 흔히 사용되는 미생물 제제와 효소제제(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미생물, 효소는 제외).

가축과 벌의 생산물

다음은 가축/벌 생산물의 가공을 위해 임시로 만든 목록이다. 나라별로 5.2항의 권고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물질의 목록을 만들 수 있다.

번호	명 칭	조 건
	탄산칼슘	—
	염화칼슘	치즈 제조시의 고화제/응고제
	고령토(Kaolin)	붕랍에서 추출
	젖산	유제품 : 치즈 제조시의 응고제, 염수의 pH 조절
	탄산나트륨	유제품 : 중화제
	물	—

부속서 3

검사/인증시의 최소 검사요건 및 예방조치

1. 본 가이드라인 제3장에 따른 표시를 한 제품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식품 제조과정 전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공인 인증기관이나 관할기관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사관련 정책과 검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검사원이 모든 기록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사업장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대상 사업자는 검사원이 사업장을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또 제삼자의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생산 구역

3. 유기식품은 생산장소와 저장시설이 비유기 식품과 뚜렷이 분리된 구역에서 생산해야 한다. 생산 구역에는 준비나 포장에 사용되는 장소도 포함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해당 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준비, 포장해야 한다.
4. 검사를 개시할 때는 사업자와 인증기관이 다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작성, 서명해야 한다.
 - (a) 생산구역 및 수거지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저장구역, 생산구역, 단위농지를 포함시키고 준비작업이나 포장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장소도 포함시킨다).
 - (b) 야생식물을 수거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생산자가 제삼자의 보증서를 첨부한다. 이는 부속서1, 제10항의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 (c)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각 생산구역에서 실제로 취하는 조치.
 - (d) 본 가이드라인 제4장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해당 농지나 수거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처리한 날짜.
 - (e) 본 가이드라인 제3장과 제4장에 준하여 생산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 6.9항에 규정된 조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업자의 약속.
5. 사업자는 매년 인증기관이 정한 날짜 이전에 인증기관에 작물생산 스케줄을 통보한다. 스케줄은 단위농지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6. 사업자는 구입한 원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그 출처, 특성, 수량, 용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사업자는 판매한 농산물의 특성, 수량, 수취인에 대한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은 매일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구역에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용 장부에 본 부속서 B2의 세번째 항목에 정해진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7. 큰 가축은 개별적으로, 작은 포유동물이나 가금은 군체로, 벌은 벌통으로 구분해 놓아야 한다. 가축과 벌 군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해야 한다(이는 감사에도 필

요함). 농장 운영자는 다음에 대해 상세하고 업데이트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a) 가축의 품종 또는 계통
- (b) 구매 기록
- (c) 질병, 부상, 생식문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유지 계획
- (d) 치료 및 약물 투여(방역 기간과 치료받은 동물/벌 군체의 표시 포함)
- (e) 공급한 먹이 및 먹이의 출처
- (f) 단위 농장 내에서의 가축 이동과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의 벌 군체 이동
- (g) 운송, 도살, 판매
- (h) 벌 생산물의 채취, 처리, 저장

8. 용도가 본 가이드라인 4.1(b)항에 부합하는 물질 이외의 물질을 생산구역에 저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9. 인증기관은 최소한 1년에 한번씩 생산구역 전체에 대해 물리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허용되지 않는 제품이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에서는 시험용으로 해당 제품의 견본을 수집할 수 있다. 생산구역을 방문한 다음에는 항상 검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또한 필요에 따라 또는 불시에 생산구역을 방문하기도 해야 한다.
10. 사업자는 인증기관이 검사를 위하여 장부나 증빙서류를 살펴보는 것과 저장/생산구역이나 단위농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검사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11. 본 가이드라인 제1장에 언급된 제품 가운데 최종 소비용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본 가이드라인과 부합하지 않는 물질이나 제품과 섞이거나 내용물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운송해야 한다. 현지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제품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한다.
 - 생산 또는 준비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 제품의 이름
 - 제품이 유기 지위임을 나타내는 표시
12. 사업자가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의 생산구역을 운영할 경우(병행 경작)에는 제1장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작물도 위 4, 6, 8항목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 3항목에 언급된 구역에서 생산되는 식물과 구별이 어려운 종류는 이들 생산구역에서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
 - 관할기관이 검사기준의 완화를 허용할 때는 해당 제품의 유형과 상황 및 보완검사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보완검사는 불시 방문, 추수기 동안의 추가 검사, 추가 서류 요청, 사업자가 제품의 섞임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회원국은 제8장의 규정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까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아도 검사수단이 만족스러울 때는 같은 종류의 작물을 병행 경작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13. 유기적인 가축 사육을 위해서는 한 농장 안의 모든 가축을 본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규칙에 따라 사육해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하지 않은 가축도 유기 농장에 둘

수 있지만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한 가축과 뚜렷하게 분리해 놓아야 한다. 관할기관은 보다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서로 다른 종의 사육 등).

14. 관할기관은 다음 조건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한 동물을 공용지에 방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a) 해당 공용지가 최소한 3년 동안 본 가이드라인 4.1(a), (b)항에 허용된 제품 이외의 것으로 처리된 일이 없어야 한다.

(b)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뚜렷이 격리시킬 수 있어야 한다.

15. 가축 생산과 관련하여 관할기관은 본 부속서의 다른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생산의 모든 단계와 소비자에 대한 판매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통해 가축 생산으로부터 처리과정을 거쳐 최종 포장 및 라벨 부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축 및 가축제품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B. 준비 및 포장 구역

1. 생산자나 사업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해당 구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관련작업 전후에 농산물의 준비, 포장,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

-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단위구역에서 실제로 취하는 조치 제시

해당 구역 책임자와 인증기관은 위 사항을 담은 서류에 함께 서명해야 한다

검사 보고서에는 본 가이드라인 제4장에 준하여 운영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 6.9항에 규정된 조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업자의 약속을 담고 쌍방이 서명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운영기록을 작성, 보관하여 인증기관이 다음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본 가이드라인 제1장에 의거 해당구역에 반입된 농산물의 출처, 특성, 수량

- 본 가이드라인 제1장에 의거 해당구역을 떠난 제품의 특성, 수량, 수취인

- 해당 구역에 반입된 원료, 첨가제, 생산 보조제의 출처·특성·수량, 가공제품의 성분 등 인증기관이 운영과정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

3. 본 가이드라인 제1장에 언급되지 않은 제품이 해당 구역에서 가공, 포장, 저장되는 경우의 조치

- 작업 전후에 본 가이드라인 제1장에 언급된 제품을 저장할 장소를 구역 내에 별도로 만든다.

- 작업은 본 가이드라인 제1장에 언급되지 않은 제품에 이루어지는 유사한 작업과 장소와 시간을 분리하여 실시하되 작업을 중단 없이 계속하여 로트 전체의 처리를 마친다.

- 그같은 작업이 빈번히 일어나지 않을 때는 작업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인증기관과 합

의한 시한 내)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각 로트를 뚜렷이 구별하여 본 가이드라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인증기관은 최소한 1년에 한번씩 해당 구역 전체에 대해 물리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허용되지 않는 제품이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에서는 시험용으로 해당 제품의 견본을 수집할 수 있다. 구역을 방문한 다음에는 항상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검사보고서에는 구역 책임자의 서명을 받는다. 인증기관은 또한 필요에 따라 또는 불시에 구역을 방문하기도 해야 한다.

5. 사업자는 인증기관이 검사를 위하여 장부나 증빙서류를 살펴보는 것과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검사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6. 본 부속서 A.10에 나오는 운송 관련 요건을 적용한다.

7. 사업자는 본 가이드라인 제1장에 언급된 제품을 접수하는 대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포장이나 용기의 봉인 상태(봉인이 필요한 경우)

– 본 부속서 A.10에 규정된 사항의 표시. 점검 결과는 B.2에 정해진 장부에 분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 제6장에 명시된 생산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유기생산물임을 표시함이 없이 판매해야 한다.

C. 수입

1. 수입국은 수입자와 수입 유기제품의 검사요건을 정해 놓아야 한다.



2. 미국, 일본, EU 등 외국의 유기식품 관련규정

외국의 유기인증 및 표시제도

1. 미국

가. 유기인증제도 : 인증의무화 제도 시행

■ 미국 농무성(USDA) 주관으로 미국내에서 유통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함.

○ NOP 기준에 따라 생산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인증

○ 연간 판매액이 5,000달러 이상인 유기농 생산자에 대한 인증의무화 시행(2002.10.21.시행)

○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유기농(ORGANIC)' 표시 및 'USDA ORGANIC 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 수입식품의 경우도 인증을 받아야 판매 가능하며, 비유기 식품을 유기식품으로 표시하거나 판매시 10,000\$ 이하의 벌금 부과

■ 관련 법규

○ 유기식품생산법(Organic Food Production Act)

○ 연방유기식품프로그램규정(National Organic Program's Regulation)

■ 인증기관 : 주정부, 민간인증기관(USDA의 승인을 받은)

○ 2002.4.1 현재 58개 국내기관(주정부 16, 민간 42개) 및 37개 외국기관이 인증기관으로 등록됨.

○ 주요 인증기관

CCOF(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

OClA(Organic Crop Improvement Association)

OGBA(Organic Growers & Buyers Association)

QAI(Quality Assurance International)

나. 유기표시제도

■ 의무 표시사항 : 유기농원료 목록, 생산자(수입자, 유통업자)의 명칭?주소

■ 유기농함량에 따른 표시사항

○ 100% : “100% 유기농(식품)” 표시 가능

○ 95% 이상 : 주표시면에 “유기농(식품)” “USDA ORGANIC”마크, 인증기관 마크, 유기농 함량 표시 가능/ 정보표시면에 유기농원료 목록 및 인증기관 명칭을 표시해야 함.

○ 70~95% 미만 : 주표시면에 “유기농원료(OO)로 제조(made with organic ingredient)”, 인증기관 마크, 유기농함량 표시 가능하나, “유기농” 표시 및 USDA 마크는 사용할 수 없음.

○ 70% 미만 : 주표시면에 유기농함량만 표시 가능하고 “유기농”, USDA 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는 표시 불가함.



2. 일본

가. 유기인증제도 : 인증의무화 제도 시행

■ 농림수산성 주관으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의무화 제도를 시행함 (2000.10.1).

○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일본농림규격에 의해 인증된 제품에 한해 유기 표시 및 JAS마크 허용

■ 관련 법규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

○ 2002.4.23 현재 68개 인증기관 및 6개 외국인증기관이 등록

■ 인증기준

○ 유기농산물 : 화학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3년 이상을 경과한 포장에서 수확된 농산물

○ 유기가공식품 : 원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산물이어야 함.

나. 유기표시제도

■ 표시 사항 : “유기” 표시, JAS 마크, 생산자명 및 주소

■ 표시금지 사항

○ “천연재배” “자연재배” 등 유기농산물 표시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

○ 일반농산물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인식시킬 수 있는 표현

3. 중국

■ 녹색식품인증제도 시행 : 정부가 직접 인증 및 관리

○ 농업부 산하기관인 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A 등급 및 AA 등급으로 인증

A 등급 : 저농약 식품에 해당

AA 등급 : 유기식품에 해당

■ 인증품목 : 농산물, 음료류, 육류가공품, 과일통조림, 유제품, 곡물가공품, 아동보건식품 등

■ 표시사항 : 녹색식품 마크, 인증번호

4. EU

■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 International Famers Organic Agriculture Movement)의 기준에 근거하여 EU기준 및 유기인증제도 시행

○ EEC(유럽경제공동체)2092/91 규정

■ 인증 대상 :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품

■ 유기 표시 : 가공식품의 경우 최종제품내에 유기농원료가 95% 이상이어야 유기농 표시 및 유기농로고 표시 가능

○ 유기농로고는 자율적으로 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로고를 표시하는 경우 인증기관명 및 인증번호, 생산자명을 표시해야 함.



외국의 대표적 유기농식품 인증기관인 USDA, JAS, IFOAM의 인증 마크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



Organization name :
 Certificate Number :

인증명	적용범위 및 내용
FDA시험성적서 (미국식품의약국)	·식품류의 분석, 감시, 감정의 3가지의 주요업무 수행 ·식품의 성분, 안전성 및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식품의 안전과 유해성 규명 ·의료기구, 가정용 기구, 화학약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식료품 등에 적용
JAS (일본농림성)	·2002년 일본이 채택한 유기식품 인증 ·모든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에 사용 ·일본에 수출, 유통되는 유기식품에 적용 ·라벨표시는 의무, 인증기관로고와 같이 사용가능
USDA-NOP (미국농무성)	·2001년 수립된 미국연방 유기 인증 ·모든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화장품, 첨가물에 적용 ·미국에 수출, 유통되는 유기식품에 적용 ·미국, 중국,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라벨표시는 의무, 인증기관로고와 같이 사용가능
EEC2092/91 (유럽연합)	·1991년 유럽연합이 채택한 유기식품 인증 ·모든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에 사용 ·유럽연합, 터키, 중앙아시아, 인도, 남아메리카에서 사용 ·라벨표시는 의무, 인증기관로고와 같이 사용가능